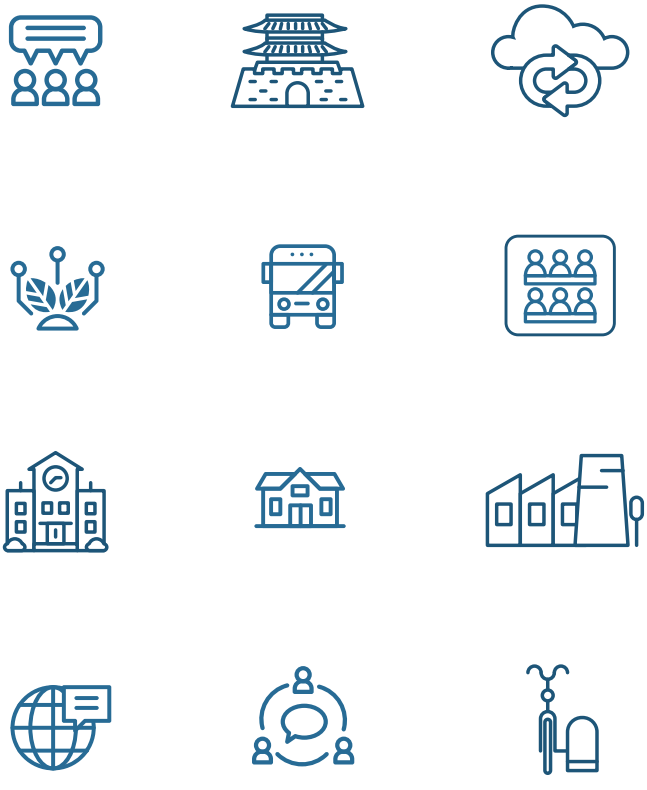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3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 ····· 1

2.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8

3.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관계부처 합동) ····· 18

4.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3

5.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점자교육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34

6.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교육부) ····· 38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청년수당, 현금 지원 외에 구직 위한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 49

2. 서울특별시 '규제혁신4.0' 규제철폐 정책 시행 (서울특별시) ····· 54

3.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경상북도) ····· 60

4. 경남도민연금 도입 (경상남도) ····· 67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취득세 감면조례 일몰타당성 분석(한국지방세연구원) … 73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 및 쟁점(국회예산정책처) …… 78

3. 아파트 옥내소화전설비의 소방호스 전개 시간 분석(국립소방연구원) …… 86

4.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93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대규모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계획변경 적정성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05

2.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 110

3.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사업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 114

4. 특수교육 재정지원 및 특수학급 설치 확대 필요 (교육위원회) …… 119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개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확대,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 정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1 추진 근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법」에 대한 특례) '25년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시행계획 수립('25. 2. 20.발표)

※ '22년 10월 4일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2 추진배경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 유도**

3 주요내용

1) 대상 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추가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대상지역 선정은 공모 배정에서 **지자체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쿼터 배정**으로 변경

○ 기간을 **단년도에서 다년도(2년)** 운영, 2026년까지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5,072명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배정**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 기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로 마련**

○ 광역지자체 가점 상향 조정, **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일정기간(3년) 이상 체류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전환**으로 장기 정착 지원

○ 동반가족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 허용, 지역 내 가족 단위 정착 촉진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 **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 :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TOPIK 3급) → 4단계(TOPIK 4급)

○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 가능**(단 사행행위 및 사회질서 저해 업종 제외)

○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확대** : 기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의 동일 **업체당 최대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고용 확대**

3 기대효과

○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 촉진

-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유입**을 통해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 완화**
- **장기 체류 요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지속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지역 경제 활성화**

-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지역 경제 성장 촉진
- 고용시장 확대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을 통해 **지역 산업체 인력난 해소**
- 농업, 제조업, 운송업 등 **주요 산업군에 외국인 유입** 증가

○ **외국인 정착 지원 체계 개선**

- **동반가족의 취업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
- 한국어 능력 기준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외국인국제정책과]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운영계획

○ 배정쿼터(2개년) : **1,116명**<지역특화 우수인재 796명, 숙련기능인력 320명>

시군	계	인구감소지역										관심	그외지역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익산	전주	군산	완주
우수인재 (F2R)	796	100	50	300	40	36	50	40	40	40	100				
숙련기능인력 (E74/E74R)	320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숙련기능인력(E74)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1년 단위 배정(160명)>													

《체류자격별 주요내용》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대상)유학생(D2, D10), 전문인력(E7) / (조건)인구감소지역 거주·취업 등+도 추천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대상)외국동포·가족 / (조건)인구감소지역 거주 + 도 추천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대상)근로자(E9)<**2년** 이상 거주자> / (조건)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취업 등+도 추천

▶ **(숙련기능인력(E74))** (대상)근로자(E9)<**3년** 이상 거주자> / (조건) E74R 외 지역 거주·취업 등+도 추천

※ E74R과 E74는 **동일 제도(k-pointE74) 내** 운영하며, **상호 쿼터 조정 가능/ 1년 쿼터 160명 조기 달성 후 시군 개별 배정**

※ **('23년)**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 → **('24년)** 인구감소 10개 시군(全 시군)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구 분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숙련기능인력 (E-7-4)
대 상 지 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도내 전지역
대 상	① 유학생(D-2, D-10) ② 전문인력(E-7)	**2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3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 수도권은 4년 이상 체류
주 요 요 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로계약(2년)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추후 보완 가능) ③ 현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인구감소지역 구직중인자 가능)	
거주지 제한	5년	3년	
취업 가능업종	제한없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제외)	일반제조업체,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체	
고 용 인 원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최대 50명)		내국인 고용인원의 30% (인구감소지역 50%)
취업 가능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동반가족 / 배우자 취업	허용(대상지역 제한, 단순노무 분야)		동반가족 거주 가능(취업불가)
자 녀 취 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주요 변경 사항

- **(기간/범위)** 단년도→2개년('25~'26년) /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E74R 시행)**
- **(고용인원)** 최대 20명(내국인 대비 50%) → **최대 50명**(내국인 인원에 따라 차등)
- **(요건강화)** 우수인재(F2R) 한국어능력(3→4급) 및 동일국적 제한(40→30%) 강화

구 분	2024년	2025년
사 업 기 간	○ 단년도(1년단위)	○ 2년 단위(2025~2026년)
시 행 범 위	○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 인구감소관심지역(익산시)* 포함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만 추진
고 용 인 원	○ 내국인 고용인원 50%(최대 20명)	○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최대 50명)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 3명 6명~50명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100명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150명 / 40명 151명 ~ / 50명
취 업 업 종	○ 지자체 허용업종	○ 업종 제한 없음
한 국 어	○ **(우수인재)**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 **(우수인재)** 한국어 능력 4급 이상(강화)
국 적 제 한	○ 시군별 동일국적 40%	○ 시군별 동일국적 30%(강화)

○ 모집 전략

- **(인력연계)** 취업박람회·기업 설명회 등을 통한 **기업-외국인 취업** 연계

  * ('24년) 취업박람회(5회, 전주대·우석대 등), 기업설명회(4회, 김제·장수 등)

- **(정착유도)**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으로 초기 정착 유도

  * 지역기반비자(E74R, F2R 등) 변경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 지원(3개월 이상 체류시)

□ '23 ~ '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현황

〈 2024년 지역특화 우수인재 시도별 모집 현황 〉

구 분	배정쿼터 (F-2-R)(비율)	모집인원 (쿼터대비 비율)	재외동포 (F-4-R)(쿼터外)	총모집인원 (F-2-R+F-4-R)
10개 시도	**3,291(100%)**	**1,734(53%)**	**376(100%)**	**2,110(100%)**
경 북	700(21%)	387(55%)	116(31%)	503(24%)
충 남	488(15%)	296(61%)	87(23%)	383(18%)
전 북	**703(21%)**	**306(44%)**	**6(2%)**	**312(15%)**
충 북	205(6%)	150(73%)	107(28%)	257(12%)
경 남	250(8%)	231(92%)	-	231(11%)
전 남	425(13%)	72(17%)	55(15%)	127(6%)
부 산	120(4%)	120(100%)	5(1%)	125(6%)
대 구	70(2%)	70(100%)	-	70(3%)
강 원	210(6%)	63(30%)	-	63(3%)
경 기	120(4%)	39(33%)	-	39(2%)

〈 시·군별 지역특화 우수인재 모집 현황 〉

연도	배정	모집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동포
'23	**400**	**400**	63	31	160	21	59	66	<'23년 미시행>				**11**
'24	**703**	**306**	42	22	204	5	7	6	16	3	-	1	**6**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23년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배정인원 400명을 전원 모집하였으나 **'24년도에는 703명의 배정인원 중 306명만(44%) 모집되어 참여 시·도 평균 53%에 미치지 못함**

- '23년 대비 시·군의 고용인원이 편차가 심한 것은 **기업의 참여와 외국인 대상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시·군 수요조사시 **기업체의 제시 사항(연봉, 직무분야)과 대상자의 희망 연봉(GNI 70% ↑)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모집률 저조로 이어짐
- 또한, 규모있는 기업체에서 고용 인원을 확대하고자 해도 **최대 20명 모집 제한에 저촉되어 고용이 어려움**

□ 개선방향

○ 기업 수요조사시 **제시 연봉 및 직무분야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맞춤형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가 요구됨**

○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공, 의료 등 복지 서비스 개선 등 도내 정착을 위한 생활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자 발급 전담 상담 창구 운영 및 비자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지원이 필요**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검토**

- **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도시 지역 인구 감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원자들이 농촌지역보다는 주거 및 근무 환경이 좋은 도시 지역의 제조업체 등을 선호**하는 쏠림현상 발생
- 청년 유출 및 고령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전북 농촌의 **경제 인구 유치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사업 도입 검토**

참고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신설)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 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변동사항 없음

2.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수립**을 위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25.03.12.). 조사결과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 필요

1 추진 근거

○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함

○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2020년 12월 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조사로,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함

** **2023년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하여 측정됨
(조사대상 : 전국 60세 이상 국민, 표본규모 11,000여명)

2 주요내용

□ 치매역학조사* 주요결과 (지역사회 거주 환자 대상)

* ㉠**치매 유병률 산출**(성별, 연령별, 지역별), ㉡**치매 위험요인 분석**(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수준, 건강행태)

① 치매 유병률* 소폭 감소,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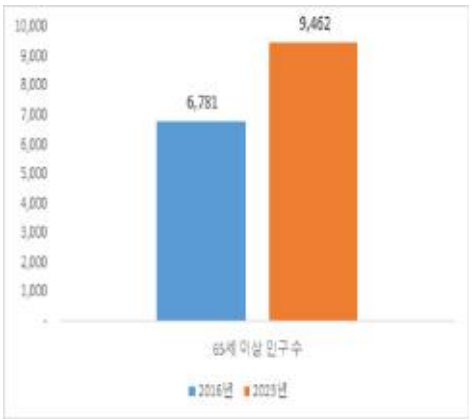
❖ 치매 유병률 : '16 9.50% → '23 9.25% ('16년 대비 0.25%p↓)
❖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 '16 22.25% → '23 28.42%('16년 대비 6.17%p↑)

* **치매 유병률** :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
** **경도인지장애** :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등**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

-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 명 증가함.**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됨

< 65세 이상 인구 ('16년, '23년) >



< 65세 이상 인구 증가 비교('16년, '23년) >



-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됨.** 또한, **치매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의 점진적 개선**과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45세 이상) : (뇌졸중) 2008년 14.2% → 2022년 10.3%, (허혈성심질환) 2008년 8.7% → 2022년 5.7%

-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임.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었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②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증가 추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 증가 추세**
- **치매 인구(65세 이상)** : '25년 97만 명 → '26년 101만 명 → **'44년 201만 명**
- **경도인지장애 인구(65세 이상)** : '25년 298만 명 → '33년 408만 명 → '40년 504만 명

* 2023년 치매역학 및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노인 인구수 활용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치매 유병률 9.17%),**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됨

-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 명(치매 유병률 10.32%), 2040년 218만 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매 환자 추이('16년, '23년) >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30년	2040년	2044년	2050년	2059년	2070년
2023년 조사	**970,759**	**1,014,865**	1,212,315	1,795,287	**2,007,848**	2,258,915	**2,335,939**	2,238,013
2016년 조사	**1,083,977**	-	1,367,651	**2,176,558**	-	3,026,593	-	-

-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 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2033년은 40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 명, 2040년 403만 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③ 치매 고위험군 분석

❖ **여성, 고령, 농어촌, 독거가구,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치매 유병률 높음**

-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남성 0.7%p↑, 여성 0.9%p↓)**을 보임.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으로, 이는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됨

-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임

< 연령별 치매 유병률(5세 구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65~69세	4.99%	**6.42%**	2.22%
70~74세	5.03%	**5.07%**	4.99%
75~79세	**10.70%**	12.37%	**9.68%**
80~84세	**15.57%**	15.54%	**15.75%**
85세 이상	**21.18%**	11.36%	**28.34%**

- **지역별로**는 ① 동 5.5%, **읍·면 9.4%**, ②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음**.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이며,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됨.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9.50%) 대비 **소폭(0.25%p) 감소**하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2.25%)은 6.17%p 증가**한 수치임

* (치매 유병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

□ 치매실태조사* 주요결과

* ㉠**치매 돌봄 현황 파악**(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 현황 등), ㉡**치매 관리 비용 산출**(직접비용, 간접비용 등)

① 치매 환자의 취약한 건강·기능 상태

> ❖ 치매 환자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가 절반 이상(52.6%)**
> ❖ **전체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만성질환, 우울 등) 및 기능상태 (청력, 저작능력 등) 취약** * '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치매 중증도별 가구 형태 >

구분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동거 가구	기타
치매 환자		**52.6%**	**27.1%**	**19.8%**	**0.5%**
	경증	54.9%	27.9%	**16.4%**	0.8%
	중등도	51.6%	29.0%	**19.4%**	0.0%
	중증	25%	0.0%	**75.0%**	0.0%

-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치매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

구분		만성 질환	청력 (불편정도)	저작능력 (불편정도)	우울 수준	신체활동 (비실천)	영양관리 (고도영양위험)
전체 노인		**2.2개**	**22.0%**	**31.5%**	**3.1점**	**47.2%**	**9.6%**
치매 환자	**지역사회**	**5.1개**	46.6%	60.4%	5.8점	74.0%	**32.8%**
	시설·병원	4.2개	**47.7%**	**70.9%**	**7.1점**	**90.1%**	-

②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 ❖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약 45.8%가 돌봄 부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비중 차지**
> ❖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 ❖ **돌봄으로 인한 삶의 질 부정적 변화 중 정신적 건강에서 가장 큰 변화**

-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남

  * 동거 가족: 24시간 돌봄 전제, 외부 서비스 주당 4.3시간 이용

-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남

-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돌봄 전후 삶의 변화 >

구분	삶의 질 변화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된 삶의 영역				
	변화 없음	부정적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경제 상태	가족 관계	사회참여 및 관계
지역사회	60%	40%	12.5%	50%	16.7%	-	20.8%
시설·병원	58.3%	37.5%	7.7%	59%	25.6%	7.7%	-

-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하여** 타 가족원(동거, 비동거 포함)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함

③ 치매 관리 비용

> ❖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 지역사회 1733.9만 원 / 시설·병원 3138.2만 원
> ❖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9,480원, 시설·병원은 31,38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음**

< 2023년 치매 환자의 치매 관리 비용 >

구분		지역사회 거주 환자	시설·병원 거주 환자
총 치매 관리 비용		**1733.9만 원**	**3138.2만 원**
	보건의료비[1)]	438.2만 원	1489.1만 원
	돌봄비[2)]	1162.2만 원	1533.1만 원
	간접비[3)]	133.5만 원	116.0만 원

* 주 1) 보건의료비 : 병원 입원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2) 돌봄비 : 장기 요양비, 간병비, 병원 이용 교통비, 보조용품 구입비
3) 간접비 : 환자 시간비용, 보호자 시간비용, 환자 생산성 손실 비용

-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임**

④ 치매 관련 정책 체감도

> ❖ 치매안심센터 인지도는 치매 환자보다 **치매 환자 가족이 더 높음**
> ❖ 환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 및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희망률 높음**
> ❖ **치매 환자 가족은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 높음**

-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함

-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대여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하였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남

-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치매상담콜센터 지역 17.2%, 시설·병원 32.7% 외 가족휴가제, 연말정산 등 10% 내외),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함

  * 치매가족휴가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 치매 환자 가족의 치매 정책 지원 욕구 >

구분	치매 진단 과정		치매 치료 및 돌봄 과정		치매 환자 가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지역사회	**진단비 경감(52.9%)**	검진주기 단축(24.3%)	**경제적 비용 경감(62.9%)**	치매 관리 및 돌봄기관확대 (12.9%)	**경제적 비용 경감(42.9%)**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28.6%)
시설·병원	**진단비 경감(54%)**	검진 장소 확대, 진단 절차 검사 방법 안내(12.7%)	**경제적 비용 경감(50%)**	치매 관리 및 돌봄기관확대 (16.7%)	**경제적 비용 경감(42.7%)**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19.3%)

□ 향후 정부계획

○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수립 예정** 및 **치매 노인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는 97만명**이며, **2026년 중 100만명을 초과, 2044년 200만명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임

<참고. 치매환자 추이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추이 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 (그림 출처: 시사위크)>

○ **전북자치도 치매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는 49,19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1.82%**로 나타남(전북광역치매센터 자료 참고, '24.03.14.기준) * 치매유병률 :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

○ 2023년 기준 **전북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11.82%)은 전국**에서 전남(12.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편**임. 도내 치매 환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최근 치매 환자 실종 관련 문자와 치매환자 관련 사건·사고 발생들도 많아지고 있음

○ 현재 도내 치매 추정 환자 인구수가 5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도 지난 5년여간 1만여 건으로 알려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 실종 등 관련 사건들은 늘어날 전망으로,

* 최근 5년간('20~'24.07.)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등)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됨 (전북경찰청)

○ 특히, 노인 친매환자는 실종 외 사기·폭행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여, 사전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학대 예방교육 및 실종 대비 시스템(배회감지기 등) 구축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전북 도내에는 광역치매센터(1개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 14개소) 등 치매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음. 이외에도 '한의 치매 예방사업',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전환사업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이내)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기준)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소득기준 완화 등 개선을 하였으나, **치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음

○ 단순, 약제·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보다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편적인 치매 사전예방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함. **치매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 경감(간병비 지원 등), 돌봄가족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됨

* 경기도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사업 (연 10일 내 간병비 지원 등)

○ 특히, 도시보다 **농어촌이, 독거가구의 유병률이 높은** 걸로 조사를 통해 나타남. 이번 치매 역학·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이 필요하며, 치매 환자가 많은 **전북도 자체의 치매환자 발병 및 돌봄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더 꼼꼼한 치매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3.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관계부처 합동)

◇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중심축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본격화
◇ 국가와 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 전략 자원 확대
◇ 첨단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 기대

1 추진 배경

○ 첨단 반도체(GPU 등) 기반 AI컴퓨팅 인프라는 AI시대의 국가 핵심기반으로 주요국·빅테크 간 AI컴퓨팅 인프라 경쟁 본격화

* (美) AI 인프라 원탁회의 개최('24.9), (메타) AI데이터센터 $100억 투자계획 발표('24.12) 등

○ 하지만, 국내 첨단 GPU는 빅테크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국산 AI반도체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

○ 이에, AI G3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

* 공모 대상, 사업 추진방안, 평가 및 선정 방안, 지원방안 등

2 국가 AI컴퓨팅 센터 주진 내용

○ **(개요)**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SPC를 설립하고, 정책금융 대출 등을 활용해 1EF(ExaFlops) 이상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 **(공모 대상)** 국내외 기업 컨소시엄(대표법인은 기업신용등급 A 이상)

*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 **(사업 추진방안)** SPC 지분은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하고, **입지(비수도권)**·전력 확보방안 및 요금 등은 민간이 제안

– '25년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되 초기에는 첨단 GPU 우선 구축, 점진적으로 국산 AI반도체 비중 확대

- 또한, 국산 AI반도체 활성화, 글로벌 협력, 정부 R&D 협업 등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지원

○ **(평가·선정)** 1단계기술·정책 평가와 2단계금융 심사로 단계별 추진

* 금융심사 종료 전까지 전력 확보(전력계통영향평가 등)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 **(투·융자 지원)** 정부*·정책금융기관 2천억원 출자(~'30년) 및 최대 2.5조원 한도의 대출상품** 신설·운영(~'27)

*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사업 '25년 본예산 210억원

** AI컴퓨팅인프라 지원 상품 신설('25년 최대 6,250억, '27년까지 총 2.5조원 한도)

○ **(SPC 이사회)** 민·관이 모두 포함된 이사회를 구성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 관련 주요 사항 결정*

* 정책목표 관련 사항 변경은 정부측 동의를 포함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관리

<향후 추진절차(안)>



3 정책 지원방안

○ **(전력계통영향평가)** 동 센터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지원

○ **(세제 지원)** 민간의 AI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 (공공사업 연계) 정부의 AI컴퓨팅 지원 사업, AI R&D·실증 및 분야별 AX 확산사업 등과 연계*

* AI 학습·추론 등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 AI컴퓨팅 센터 우선 활용 검토

4 추진체계 및 주요 일정

○ (추진체계) 「국가AI위원회」 內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AI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 논의

* (위원장) 경제부총리 / (위원) 과기정통부·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 등

○ (주요 일정(안))

- 사업 공고 : '25.1.23일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여의향서 접수 : '25.2월
  *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으로 공모지침서 배부
- 사업 참여계획서 접수 : '25.5월
- 기술·정책 평가 및 금융 심사 등 : '25.6월~8월
- 국가 AI컴퓨팅 센터 착수 보고 : '25.9월
- AI컴퓨팅 서비스 조기 개시 추진 : '25.11월~
- 국가 AI컴퓨팅 센터 개소식 : '27년 이내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디지털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25.2.19 참여의향서(디지털산업과-918)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였음

○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사업 참여계획서 접수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민간참여자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임

* 대표법인 기업신용등급 A 이상/10억원 이상 1,000억원 이내에서 자본금을 제시

○ 하지만 최근 행전안전부에서 조사한 보조사업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의 AI 관련 자체 사업 및 예산은 '25년 4건에 559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전북대학교 SW대학중심사업단과 업무협약(3.17)을 추진하고 생성형 AI시스템 자체 구축(사업비 300백만원)을 추진하여 생성형 AI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더 많은 사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2025년 인공지능(AI) 관련 자체사업(보조사업 제외) 현황>

시군구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주요 사업내용
도본청	행정정보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14,000	간부공무원 ChatGPT Team 요금제 구독료
도본청	행정정보과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구축	300,000	생성형 AI 자체구축을 위한 GPU 서버구입
도본청	디지털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	200,000	수요기업에 맞는 AI솔루션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완주군	행정지원과	민원대응 AI완주봇 도입	45,000	음성교환실 민원전화를 Ai보이스봇이 통화하여 업무 당장직원 전화번호 안내 및 통화 연결

○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5.1.21. 제정/'26.1.22 시행)이 제정되었고, 전북자치도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5.3.7. 제정)를 제정하였으며, 전북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마련중이며, 홀로그램, 농생명·이차전지 분야 AI융합 등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타 지자체에서는 AI산업의 육성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먼저 부산시는 AI 기반 항공산업 자율제조 기술 개발(산업부 주관)에 312억을 투입하고 있으며, 2.2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발표된 53사단 부지(해운대구)에는 국방 연구개발·AI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 대구시는 '23.12월부터 SK와 협력, 데이터센터(수성 알파시티, '28년 준공 예정)를 건립하고 있으며, 2.25일에는 초·중·고교생 대상 AI 교육기관인 대구 AI교육센터를 개소, DGIST에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AI 전문인력을 양성 중

○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고성능 AI 가속기를 구비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AI 사관학교를 운영 중, 2단계 사업으로 AX(인공지능 전환) 밸리를 구축하여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를 구현할 계획

※ (1단계) '20~'24년 총 4,269억원 투입 / (2단계) '25~'29년 총 9,000억원 규모 예상

○ 경기도는 '24.8월 AI국을 신설, 美 아마존社 출신 IT전문가를 국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향후 '道 AI 5개 년 계획'을 수립, 해외 기업(엔비디아 등)과 협력하여 AI 전문가 550명 양성 및 판교를 중심으로 AI 실증·R&D 지원 기반을 갖춘 '경기 AI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

○ 경북도는 '24년부터 '지역특화형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사업(과기정통부 주관)'을 추진, 道와 3개 市(포항·구미·경산), 영남대 등 지역 연구 기관이 협업하여 GPU 서버 확충 등 인프라 구축, AI 활용 지역 현안 해결 플랫폼* 개발·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26년, 총 258억원)

* ▲악취정보 실시간 분석(포항시), ▲방위산업 제품 설계·유지보수(구미시), ▲차량 AI 어시스턴트 서비스(경산시) 등

○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AI산업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에서도 지역 선도 산업으로 **AI산업에 대한 육성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입지가 비수도권**으로 결정되었고, 많은 전력 수요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전북자치도에서는 2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5년 5월에 사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6월~8월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모 준비가 늦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유치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고, 지금이라도 긴급용역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4.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25.1.23)하여 제1차 회의에서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등 발표

1 배경 및 추진현황

○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이며, 특히 경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7년 3조 3천억불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추산

○ 또한 사회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안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 되고 있음

○ 이에, 인프라 측면에서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규제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바이오 인력 양성이 시급

○ R&D는 그간 축적해 온 투자를 바탕으로 독자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성숙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

○ 산업 분야는 의약품 위탁개발 및 제조 조직(CDMO)* 산업 성장세 속에서도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은 자금조달 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 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서비스/글로벌 CDMO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CAGR) 8.5%로 2032년까지 최대 4,651억 4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2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바이오로 여는 경제 도약과 사회 혁신,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추진전략

바이오의 3I 대전환

【인프라(Infrastructure) 대전환】

상생의 바이오클러스터	장벽을 뛰어넘는 제도기반 혁신	현장에 뿌리를 둔 인재 확보

【R&D 혁신(Innovation) 대전환】

바이오+X, 가술융합	데이터 기반 R&D 혁신	바이오 R&D 추진체계 혁신

【산업(Industry) 대전환】

제조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촉진	더 큰 시장으로 도약

추진체계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

3 주요내용

인프라 대전환 :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첫째, 상생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역·분야를 넘어선 유기체적 협력 추진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클러스터간 협업체계 (버츄얼 플랫폼) 구축 (~'30)	레드·그린·화이트·블루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개 달성 (~'30)	클러스터 주변 지역과 혁신의 성과를 나누는 상생 기반 구축

○ 물리적 집적단지형 클러스터에서 기능적 연계 및 버추얼 기반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

○ 정부는 바이오 분야의 전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레드바이오 분야 허브-스포크 체계를 구축하며, 임상시험과 생산공정을 전문화하는 공공 CRO/CDMO 기능을 한층 강화

* 지역 유망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사업화 총괄 지원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22년 서울에 개소

○ 클러스터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출범

○ 아울러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둘째, 장벽을 뛰어넘는 제도·기반 혁신으로 역동적 바이오 경제 달성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수요자, 시장 기반 제도혁신	바이오 안보 위기 사전적 대응
범부처, 민관이 협력하여 규제혁신 역량 극대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혁신 달성	국가바이오안보전략 및 범부처대응체계 마련

○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

○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강화

○ 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신기술의 허가·심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임상·허가·국제협력에 이르는 전 주기 규제혁신을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팬데믹 등 바이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는 '바이오안보전략'을 수립

- 예측·탐지·대응·대비 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재생의료 등 전략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공조도 강화

셋째, 현장에 뿌리 둔 인재 확보: 공백 없는 성장 동력

충분한 바이오 인재 확보	실무형 인재 투자 활성화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
바이오헬스 11만명 양성 추진(~'27)	바이오 실무인재 수요 공급 불일치 대응 전략 마련	의사과학자 등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Two-Track)

○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인재를 적극 육성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9개 부처가 협업하여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

○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다학제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AI 신약개발·디지털헬스케어·합성생물학·농식품 바이오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연계·지원

○ 의사과학자(MD-Ph.D) 등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Two-Track' 전략을 추진

R&D 대전환 : Innovation Transformation

첫째, 바이오+X 기술 융합 : 혁신의 가속화, 파급 및 인류 난제 해결

혁신의 가속화	산업으로의 파급	난제 해결
✔ AI 기반 신약개발로 기간·비용 1/2로 단축 ✔ 바이오파운드리로 바이오 실험 속도 20배 가속화	✔ 식품·소재·환경 등 분야 새로운 바이오 솔루션 개발 ※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 미생물 기반 탄소자원화 등	✔ 국민 건강의 근본적 개선 및 수명 연장 ✔ 해양·우주바이오 연구로 신약·소재 발굴

○ 바이오 분야와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연구 속도와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디지털바이오·바이오 제조 분야를 집중 육성

○ 기존 제약, 의료기기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대

○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 난제해결에 도전

둘째,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 혁신 : 바이오 R&D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플랫폼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제도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에 민·관 데이터 연계 (K-BDS 데이터 1,000만 건 확보, ~'35)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 (GPU 3,000개 수준, ~'35)	✔의료데이터 활용제도 개선,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 IRB, DRB 심의절차 간소화, 데이터 플랫폼 기탁 시 인센티브

○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R&D의 패러다임을 전환

○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

○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정부·공공연·병원·해외 등 데이터를 연계하여 '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

○ 지속가능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

셋째, 바이오 R&D 추진체계 혁신 : 바이오 First-Mover로 도약

기술격차 감소	원팀(One-Team) 협업체계	사업체계 혁신
✔바이오 기술격차 감축 ※ 생명·보건의료: 최고기술국 대비 85% 농림수산·식품: 90% 달성(~'35)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 민-관, 범부처, 공공기관,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	✔바이오R&D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확대, ✔특허·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 정부 R&D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원-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사업체계 개편

○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범용·기반 기술의 자립화

○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범부처, 연구기관, 전문기관, 글로벌 협력을 강화

산업 대전환 : Industry Transformation

첫째, 기술 사업화 :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

바이오텍 제품화 지원	바이오제조 전주기 혁신	성능검증 지원
✔ 5개 공공 CDMO 중심으로 바이오텍 제조 접근성 확대	✔ K-BioMADE 프로젝트 추진(예타 신청 25上)	✔ 바이오텍의 임상시험 지원 확대

○ 바이오텍 기술의 실현을 위한 제품화 지원과 함께, 바이오 제조의 근본적 혁신과 성능검증 지원을 통한 시장 접근성을 강화

○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의 제조기반 지원을 위해 旣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하여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

* 5개 공공 CDMO : 전남 화순·경북 안동 백신실증지원센터,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송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

○ AI 기반으로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 및 제조 혁신을 추진

○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임상 분야도 지원

둘째, 기업 성장 촉진 : 바이오 성장 사다리 구축

바이오 기업 자금조달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 지원
✔ 메가펀드 조성 ✔ 정책금융·무역보험 확대	✔ M&A 등 금융제도 개선 ✔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 맞춤형 경영 컨설팅 ✔ 해외 성장 지원거점 확대

○ 바이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역량 강화를 지원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VC 지분매각 의무 폐지, 인수자금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여 M&A를 활성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기업 운영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품의 상용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셋째, 더 큰 시장으로 도약: 바이오를 반도체를 잇는 대표산업으로 육성

바이오 CDMO	바이오 신시장	바이오 소부장
✔ 세계시장 주도 위한 기업애로 총력해소, 사업 다각화 지원 ※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32)	✔ 바이오연료 사용의무화 도입 ✔ 동물대체기술 개발 ※ 바이오항공유 수출시장 30% 확보('30)	✔ 소부장 핵심품목 확대 ✔ 실증지원센터 구축 ※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 15%('30)

○ 우리 기업이 강한 분야는 더 강하게, 새로운 시장은 빠르게,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도 튼튼하게 지원

○ 세계적으로 친환경, 생명윤리 강화 등 기조에 따라 창출되는 신시장 확보를 지원

○ 바이오 산업과 공급망의 근간인 바이오 소부장도 더욱 튼튼하게 지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바이오방위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오가노이드(유사 장기)분야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선정이 무산됐음

○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3.29.)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9.19.)을 마련하였으며,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5년간('25~29년) 바이오기업 150개사를 유치하고, 기업 R&D지원(200억원 내외), 레드바이오분야 펀드(1274억원) 조성으로 기업유치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창업 등 유도하고 있음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지난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5개 지역 모두 바이오기업*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음

* 인천·경기 시흥: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일동제약 등/ 대전(유성):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등/ 전남(화순): GC 녹십자 등/ 강원(춘천·춘천): 유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등/경북(안동·포항):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 정부에서도 '25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하여 바이오 인프라, R&D, 산업 부문에서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하여 3년간('21~'23년) 17개사 및 '24.8월 총 26개사를 유치하였으나, 실제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기반 시설 및 생산 시설 기반 조성이 미약해 보임

○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 농생명 분야 관련 바이오 산업 및 현재 정읍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지난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오가노이드바이오 분야는 연구소 중심 진행되었으나, 실제 전북자치도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분야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산공장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1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방향(비전 및 전략)

대한민국 바이오 3대전환 전략(안)

비전 바이오로 여는 경제 도약과 사회 혁신,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기본방향 **바이오 인프라**(Infrastructure), **R&D**(Innovation), **산업**(Industry) 3가지 핵심 부문에서 대전환 모색

인프라 대전환 :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달성

1. 지역을 넘어선 유기체적 협력
2. 국민체감 규제 · 제도혁신
3. 우수인재 유치·양성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클러스터간 협업체계 (버츄얼 플랫폼) 구축 (~'30)

클러스터 기반 일자리 창출
- 레드·그린·화이트·블루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개 달성 (~'30)

현장에 뿌리를 둔 인재 확보
- 바이오 신규 인력 11만명 확보

R&D 대전환 : Innovation Transformation

바이오 기술주권 확립

1. 바이오 + X로 혁신 가속화
2. 데이터 기반 R&D 혁신
3. R&D 추진체계 개선

바이오+X 기술융합
- 신약개발 기간·비용 1/2
  - 13.7년 → 약 6년
  - 2조원 → 1조원
- 식품·소재·환경·해양·우주로 확산

데이터 기반 R&D 혁신
- 데이터플랫폼 연계강화
  - 데이터 1,000만 건
  - 15개 공공기관 개방협력
  - 바이오전용 GPU 3,000개
- IRB, DRB 심의절차 간소화

R&D 추진체계 혁신
- 바이오 기술격차 감축
  - 생명·보건 85%
  - 농림·수산·식품 90%(~'35)
- 원팀(One-Team) 협업체계

산업 대전환 : Industry Transformation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

1. 기술 사업화
2. 기업 성장 촉진
3. 더 큰 시장으로 도약

기술 사업화
- 5개 공공 CDMO 중심 바이오 기업 제조 기반 지원
- 공공 바이오파운드리('25~'29) 및 K-BioMADE 추진 (예타신청예정, '27~)

기업 성장 촉진
- 메가 펀드 조성, 정책금융 · 무역보험 지원
-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더 큰 시장으로 도약
- CDMO 세계시장 주도 위한 기업애로 총력해소
-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소부장 핵심품목 확대
  - CDMO 1위
  - 항공유 30%
  - 소부장 국산화율 15%

참고2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화단지 간 바이오 산업 밸류체인 연계]

◇ **대량 생산·수출** : 인천·경기(시흥)

◇ **신약개발(R&D)** : 대전 – 인천·경기(시흥) – 강원

◇ **중소형 CDMO(다품종 소량생산)** : 강원 – 대전

◇ **백신 생산거점** :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 **바이오 소부장** : 인천경기(시흥) – 대전 – 충북 오송(소부장 특화단지, '23.7월 지정)

참고3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추진목표 및 전략

비 전	의생명 바이오 산업 기반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
목 표	1. 바이오 기업 유치 150개사('25~'29년) 2. 바이오 분야 상장(IPO) 기업 5개사 유치('25~'29년) 3.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연 1,000명 육성('26년~)

4대 전략 및 11대 추진과제

거버넌스 구축	1 추진체계 :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운영 2 전담조직 :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진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1 종합계획 :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2 국가예산 : 바이오 산업 육성 중대형 사업 기획 3 공모과제 : 범부처 공모과제 참여 확대
바이오기업 집적화	1 기업유치 : 5년간 레드바이오 기업 150개사 유치 2 기업지원 :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3 규제혁신 :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발굴
바이오산업 생태계구축	1 인 프 라 : 첨단바이오 인프라 지속 확충 2 인력양성 : 기업수요 맞춤형 밸류체인별 인력양성 3 글 로 벌 :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점자교육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2월 28일부터 「전자법」,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점자법 시행규칙」시행
◇ '26년 이후 매년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및 '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28년까지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1개소씩 지정

1 추진배경

○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 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

○ '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고,

○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음

○ 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달하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한 상황으로,

○ 이번에 시행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매년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26년 ~)**

-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점자 학습자의 점자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매년 1회 실시
-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구분해 점자 읽기와 쓰기 두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
-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점자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점자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도 활용되며, 향후 점자능력 평가 모형과 시험 운영 세부 지침을 개발하고 시범 시험을 거쳐 '26년 이후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할 계획

○ **'점자교원' 양성 및 배출 ('27년 ~)**

-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가 마련됨
-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며,
- 점자교원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 및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함
- 또한 '25년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26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지역 점자교육 거점 '점자교육원' 17개 시도 1개소씩 지정·지원** (~ '28년)

-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함
- 이후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간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 예정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북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인지능력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 '25년 사업비 : 59,500천원 (도비 17,850원, 시·군비 41,650원) ※ 도비 30%, 시군비 70%
- 13개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군 지회 (무주 제외, 시군 수요조사 반영)

○ '점자도서관 운영'을 통해 원활한 정보 접근 지원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 열람, 장애인소식지 발행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5년 사업비 : 178,000천원 (도비 89,000원, 시·군비 89,000원) ※ 도비 50%, 시군비 50%

○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 향후 전북자치도에서도 점자교육원 지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문해력 향상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사회적 자립을 돕는 필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전북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을 이젠 일반인 대상으로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 단순히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됨

6.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교육부)

≪ 주요내용 ≫

◇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2까지 확대,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대학-지역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 제고, 운영 체제를 안정화

Ⅰ. 추진배경

○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필요

○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인 늘봄학교 도입

Ⅱ. 주요 추진과제

1 초2까지 집중 지원 대상 확대

□ 늘봄학교 체제 일원화

○ **(체제 일원화)** '24년 일부 유지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늘봄학교 체제로 일원화

○ **(오후늘봄)** 초1~2 모두에게 희망하는 형태, 희망 시간까지 '오후늘봄'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은 희망자에게 기본 제공

○ **(아침·저녁·방학늘봄)** 정규수업 전 '아침늘봄'과 오후 시간 이후(최장 20시까지) '저녁늘봄'은 학교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제공

□ 세분화된 수요조사 및 안내

○ **(체계적 조사)** 기초 조사(대략적 수요), 본 조사(프로그램별 수요)를 통해 재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24.11~)

○ **(예비 초1 안내)** 예비 초1에게도 늘봄학교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예비소집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수요 충분히 반영('25.1~)

2 교육의 질 제고

□ 대학·범부처 협업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협업 체계)** 지역 대학, 관계 부처 등이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각 학교는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선택·운영

○ **(지역 대학 협업)**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의 학생·학부모 및 학교가 희망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범부처 협업)** 16개 부·처·청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협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연중 총 76종의 프로그램을 전국 약 4,300개 학급에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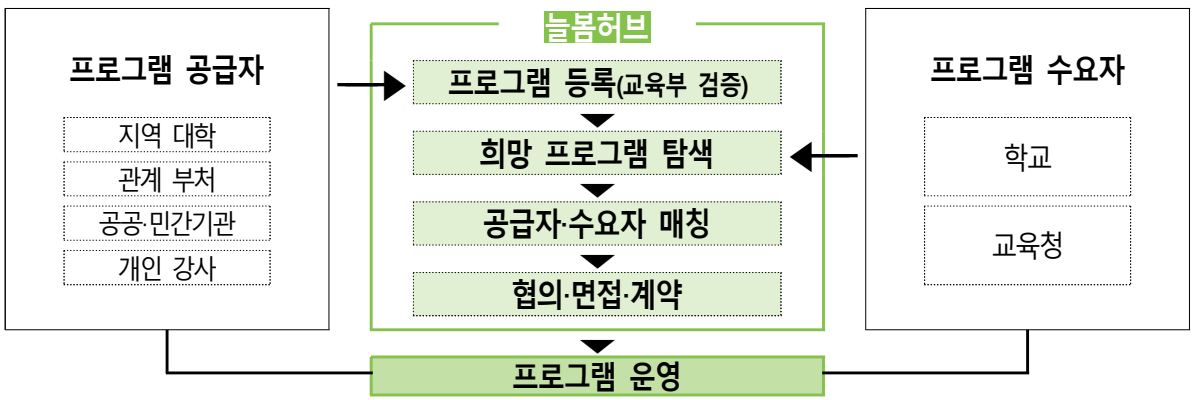
○ **(교육청 자체 협업)** 각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대학(지역 내·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늘봄 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 운영

○ **(사각지대 해소)** 기관별 공급 계획 수립 전에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발굴된 프로그램 매칭 지원('24.12~)

□ 늘봄허브 중심의 프로그램 생태계

○ **(매칭 체계)** 희망하는 개인·기관 누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활용하는 상시 매칭 플랫폼인 '늘봄허브' 운영('25.2~)

< 늘봄허브 운영 체계 >



○ **(강사 연수)** 늘봄 프로그램 강사들이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25.1~)

□ 늘봄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 **(프로그램 표준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적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교육청별 프로그램 편성 기준 마련

○ **(학년별 지원)** 지역 대학,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고학년 수준에 맞는 신산업 분야, 진로·적성 탐색, 특색 교과 프로그램 충분히 개발·보급

□ 예체능 특기 교육 지원 강화

○ **(정규수업 연계)** 정규수업 내 예체능 교육활동·동아리 활동을 늘봄학교에서도 연계 운영하여 예체능 특기 교육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 학교가 예체능 강사·공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체육단체(늘봄허브 활용), 지역 문화·체육시설과의 협력 강화

□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학력 격차 해소)** 정규수업 이후 추가 교과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제공

○ **(장애학생 지원)** 학생의 장애 특성,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애유형별 교재·교구 제공, 늘봄지원인력 배치 등 지원

○ **(이주배경학생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언어·기초학습 등) 집중 제공, 외국어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이해 제고

○ **(저소득층 등 지원)** 초1~2 외에도 모든 학생이 늘봄학교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연 60~80만원) 지원 확대

3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 활용

○ **(학교 내 공간)** 학교별로 늘봄학교 전용교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규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실·일반교실 겸용 확대

○ **(학교 밖 공간)**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의 돌봄기관, 공공기관 등과 공간 연계 활용

○ **(기타)** 지자체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 시 교육청·학교가 프로그램 매칭 등 지원

□ 거점형 늘봄학교 모델 고도화

○ **(모델 다양화)** 각 교육청이 여건에 맞게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 지역의 늘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정립

○ **(특례 마련)**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상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 마련

4 운영 체제 안정화

□ 늘봄지원실 체제 안정화

○ **(늘봄지원실장 중심 체제)** 각 학교별로 '25년 늘봄지원실장('25년 1,500여명) 배치 형태를 고려하여 늘봄학교 업무 체제 정비('25.3~)

○ **(늘봄실무인력 확충)** 큰 학교(1,000명 이상 등)에 추가 인력 배치, 처우 개선 연계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늘봄실무인력 확충('25.1~)

○ **(늘봄지원실 역량 강화)** 늘봄지원실장·늘봄실무인력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연초·연중 지속 운영하여 늘봄지원실의 전문성 강화('24.12~)

○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 교육청별로 '26년 늘봄지원실장(1,000여명) 선발 및 '27년 학교별 배치를 통해 늘봄지원실 모델 완성('25.9~)

□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

○ **(업무 전반 지원)** 늘봄지원센터의 직원별 전담 학교를 지정하여, 늘봄지원센터가 늘봄학교 행정 업무 전 과정을 지원

○ **(분야별 지원)** 교직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프로그램 확보, 인력 채용, 회계(사업비 등) 처리 등 분야의 업무 집중 지원

○ **(늘봄지원센터 역량 강화)** 늘봄지원센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필요 시, 학교 늘봄실무인력을 재배치)하고, 센터 직원 대상 업무 연수를 내실있게 운영

5 추진 기반: 온 사회와 협력 체계

□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 **(운영 체계 개편)**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 주요 계기별 정례 회의 개최 방식으로 전환(종전: 월간)

○ **(의제 확대)** 교육부의 요청 사항 외에도 교육청·지자체의 건의 사항, 관계 부·처·청의 프로그램 연계 제안 등 의제 확대 검토

□ 지역 늘봄 협업 체계 활성화

○ **(지역늘봄협의체 구성·운영)** 모든 지자체·교육청에서 광역늘봄협의체 및 기초늘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협업)

○ **(범부처 지원본부 연계)** 지역 밖 교육자원 연계, 전국 단위 규제 개선 등 필요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안건으로 상정·논의

□ 늘봄학교 법적 근거 마련

○ **(추진 방향)** 늘봄학교 운영 체계,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 국가·지자체 책무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추진 시기)**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확대되어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인 '25년 하반기 중 발의 및 제정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미래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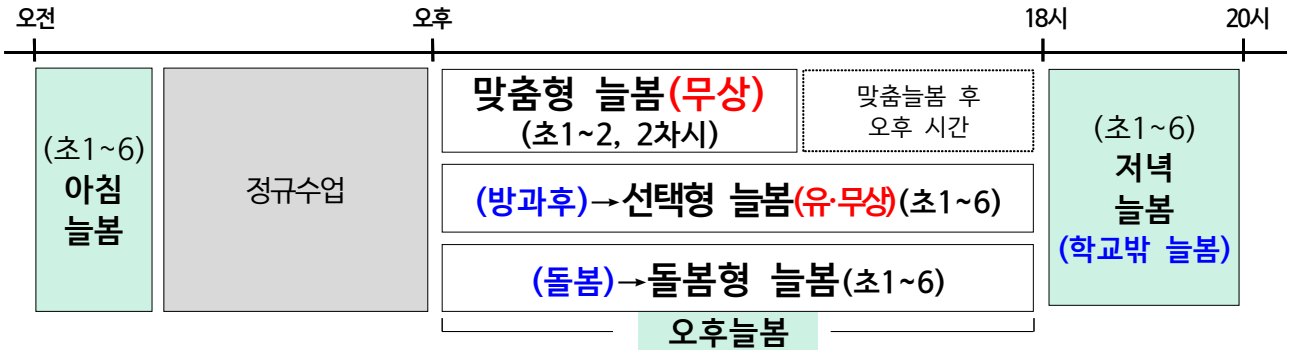
□ '25학년도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

【1】 '늘봄'브랜드 통합

구분	그동안		앞으로
체제	초등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	**늘봄학교** (맞춤형 늘봄, 돌봄형 늘봄, 선택형 늘봄)

조직	학교	(신설)	→	학교	늘봄지원실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도교육청	방과후돌봄복지담당		도교육청	늘봄·복지담당

【2】 대상 및 운영시간



【3】 2025 운영 현황

○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

(2025.3.6.기준)

맞춤형프로그램					늘봄과정 운영 공간 수			
초1,2 학생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프로그램수	강사수	겸용	전용	학교안 특별실	학교밖 지자체
20,957	19,150	91.4%	3,721	3,432	387	1,054	1,686	70

(*) 전국 2위(1위, 제주 91.8%)

○ 선택형(돌봄)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5.3.6.기준)

돌봄운영 학교수(**)	선택형(돌봄) 교실수				돌봄 전담사수	비고
	오후돌봄	연계형돌봄	저녁돌봄	합계		
407교	708실	43실	6실	757실	712	국립포함

(**) '25년 409개교 중 407개교 운영(미운영교: (진안) 송풍초, 고창부안초)

【4】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

구분		2024년	2025년	
늘봄학교 운영 학교수		415교	409교 (6개교 폐교(*)로 감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초 1학년	초 1~2학년	
안전관리 강화		안전계획 수립	(1~2학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추가 단, 학부모 요구시 자율귀가 가능	
지원 인력	인력	늘봄실무사 (교육공무직)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인원	300명	100명	54명
	역할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반	늘봄학교 업무 총괄 늘봄지원실 관리	늘봄학교 업무 수업 10시간 이상
	배치일	'24.7.1.	'25.3.1.	
학교밖 프로그램		211개 기관 전국최고	217개 기관 전국최고	
만족도		학부모 91.4% 전국최고 학생 93.0% 전국최고	-	

(*) 개야도초, 신시도초, 군산금암초, 마룡초, 심창초, 선동초

【5】 쟁점사항: 늘봄실무인력 근무여건 개선 요구

○ [현장] **요구사항**

– 신학기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늘봄실무인력 업무과다**

– 늘봄 외(특수교사업무, 보건 등) 업무 부가로 불분명한 **업무 분장 명확화 요구**

○ [도교육청] **개선 방안**

– **늘봄지원센터 담당 학교 지정(담임제)**으로 적극적 업무 지원

– 늘봄실무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강화**로 업무 전문성 향성

– 폐교 및 학생수 감소 반영한 배치 기준으로 **순회학교수 조정(목표 1인 2교)**

– **늘봄실무인력 업무량 파악**하여 지원방안 모색

○ 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은 초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늘봄프로그램(방과후학교)과 늘봄교실(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과도기를 거쳐 2025년은 초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방과후와 돌봄을 완전 통합한 정착기로 학교 및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학교 안팎 맞춤형 늘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임.

○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학교안 늘봄 강화**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차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선택형 교육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수준별 강좌 개설, 1~2학년 우선으로 쉼과 놀이 중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둘째, **학교밖 늘봄 내실화**로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운영기관을 217개('24. 211개)로 확대하여 3가지 유형(돌봄형, 주중프로그램형, 토요프로그램형)으로 운영하고, 거점늘봄센터 확대, 지역늘봄협의체를 통한 지역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셋째, **늘봄 전담체제 완성**으로 늘봄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단위학교 늘봄지원실 구축·운영으로 2024년부터

늘봄지원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늘봄전담인력으로 늘봄지원실장('25. 100명), 늘봄실무사(300명), 돌봄전담사(722명)를 배치함.

○ 늘봄학교가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교육비로 우리나라가 축소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육아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되어 **나머지 학년**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25.3.13.)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13.2조원으로 6.5% 증가**하였으며, **사교육참여율 또한 87.7%로 1.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의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보육이 12.8%로 3위, 예체능은 보육이 18.1%로 2위를 차지**하여 2024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보육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모든 학년이 소외되지 않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필요**함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청년수당, 현금 지원 외에 구직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기존 청년활력수당을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취업 준비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 방향으로 개선**

1 추진배경

○ 기존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가 제한적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위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구직 지원이 필요**

○ 청년수당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 **청년들의 진로를 장기적으로 진단하여 차별화 된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1) 맞춤형 진로 설정 프로그램 제공

○ 기존 취업 연계 중심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나, 개편에서는 진로 설정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도입**

○ 청년들의 **진로 설정을 4단계(자기이해 → 진로탐색 →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로 구분하여 개별 청년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

-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 프로그램을 제공

○ 자치구별 청년센터(15개소)에서 1:1 정책 상담 및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공통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취업 계획을 공유

< 단계별 지원 내용 >

진로 단계	지원 내용
자기이해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진로탐색	다양한 직업군 탐색 특강, 산업별 직무 소개
직무 구체화	직무별 실무 프로젝트,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구직·취업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및 모의 면접, 기업 매칭 프로그램

2)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기존 단기성 취업 특강과 컨설팅 위주의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개편을 통해 **6개월간 장기적인 취업·창업 멘토링 지원을 도입**

○ 기업 현직자 및 청년수당 기 참여자를 멘토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멘토링 운영 방식

-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와 연결되어 **지속적인 상담 및 피드백 제공**
- 멘티들은 희망 직무별로 분류되어 구성된 그룹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음
- 기업 실무자가 직접 직무 소개, 취업 준비 방법 등을 알려주며,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 멘토링 주요 분야

- **취업 멘토링** : 기업 채용 담당자 및 현직자의 실무 경험 공유
- **창업 멘토링** : 스타트업 창업가 및 전문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수험 멘토링** : 공무원, 공기업 준비를 위한 수험 전략 제공
- **문화·예술 분야 멘토링** : 창작 활동 및 프리랜서로서의 경력 개발 지원

3) 청년수당 사용처 모니터링 강화

○ 기존 청년수당이 지급된 후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사용 목적에 맞게 청년수당이 활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 청년수당 사용 규칙

- 청년수당은 클린카드(체크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특급호텔, 주점, 귀금속 구매 등 48개 업종에서는 결제가 원천 차단
- **전·월세 등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
-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발견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 모니터링 방식

- **매월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지출 여부 점검**
-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목적 증빙 서류 제출

4)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군필자의 경우 최대 37세까지 신청 가능)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 상태
- 주 30시간 이하 근무자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청년수당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복참여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등과 중복참여 불가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1) 전북자치도 청년활력수당 연계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전북자치도는 **청년활력수당 참가자 및 전북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참여자 **필수 온라인 교육과 희망자 100명에 한해 1회(3시간)의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2025년 서울특별시 청년수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력수당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군필자는 최대 37세) 신청일 기준 서울 주소지	만 18~39세 전북 거주 미취업 청년 공고일 기준 전북 주소지
지원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필수교육	참여자 '성장지원 프로그램' - 온라인 구직·취업 단계별 진로 지원	참여자 '구직역량 강화교육' 운영 - 온라인 필수교육
멘토링 교육	6개월간 장기 그룹 멘토링	단기 그룹 멘토링(100명), 1인 1회(3시간)
교육방식	오프라인 중심(취업 컨설팅, 면접 특강 등)	온라인 필수교육(1회) + 오프라인 선택 멘토링(1회)
수당지급방식	체크카드 지급 (특정 업종 결제 차단, 월별 사용 내역 모니터링)	체크카드 지급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가능)
취·창업 보상	없음	참여중 취·창업시 50만원 취업성공금 지급

< 2025년 구직역량 강화교육 '맞춤형 멘토링' 운영계획 >

○ **(운영기간)** '25. 5. ~ 10. / 1인 3시간(그룹 컨설팅)
○ **(교육대상)** 필수 교육 이수자 및 전북도내 청년(39세 이하) / 100명
○ **(교육목적)** 대인 커뮤니케이션 및 개인 심화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운영규모)** 40회 이내 운영, 지역별 혹은 관심분야 그룹 컨설팅 운영
○ **(운영방법)** 교육생 선호에 따른 그룹별 전문가 매칭
○ **(주요내용)** 취·창업 역량 고도화 심화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경력직, 이직희망자 등 다양한 계층군을 고려한 멘토 매칭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력수당 구직역량 강화교육 결과>

구분		교육 방법	최초 선발인원	사업 참여인원	수료 인원	추진일정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비 고
구직역량교육	필수1	온라인	2,000명	1,477명	**1,442명**	'24.4.22(월).~9.30(월).	5개 과정(각 2시간) 중 택1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 교육센터(연계)
	필수2	온라인	2,000명	1,477명	**1,700명**	'24.5.16.(목)~9.30(월).	집합교육(3시간)	전북청년 허브센터 (위탁 및 자체)

2) 전북자치도 청년활력수당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향

○ 전북자치도의 구직역량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온라인 교육과 소규모 멘토링(100명 한정)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개개인의 진로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부족**

- **장기적인 취업 지원 체계 부재로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이 어려**

○ **단계별 개인 컨설팅을 도입,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으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며, 온라인 교육 외에도 **기업 탐방 등 현장 직무 체험을 실시하여 실무적인 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 **최소 3~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과 취업 코칭을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 기업 현직자 및 기 취업 성공자가 참여하는 멘토-멘티 그룹을 구성하여 진로상담에서 취업까지 이뤄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2. 서울특별시 '규제혁신4.0' 규제철폐 정책 시행 (서울특별시)

◇ 건설·부동산, 기업 투자, 생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철폐 정책을 추진, 경제 활성화, 기업 환경 개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1 추진배경

○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공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부동산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

○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가 민간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

○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복잡한 행정 절차, 교통 관련 규제 등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 **시민 중심의 규제 철폐 정책을 추진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

2 주요내용

1) 서울시 규제 철폐 정책 추진 절차

○ **정책 기획 및 방향 설정**

- 건설업계, 기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조사
- 기존 법률 및 조례와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 설정

○ **법·제도 검토 및 정책 초안 마련**

- 상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관련 부서 협의 진행
-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법적 타당성 검토

○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 공청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추가 보완 필요성을 논의

○ **조례 개정 및 신설 추진**

- 관련 조례 개정안 및 신설안 마련 등 세부 시행 규칙을 정비

○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

- 규제 개선 등 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정책 효과 분석 및 추가 보완

2) 서울시 규제 철폐 주요 사례

○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 규제 철폐 1호를 발표한 이후, **3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총 8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

○ 주요 사례

-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 용적률을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축 사업의 경제성 향상을 기대
-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추진 속도
  · 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의 통합 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를 포함**
- **공공발주 관행 개선 및 적정 공사비 지급**
  · **공공건설 사업의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주휴수당 적정 지급, 기술용역 추가 과업 적정 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 추진

-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 **건축물, 도로 등 인접 산림 등에 대한 기존 일률적 환경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발 가능성을 확대

  · 대지 조성 이력, 생태 변화 등을 반영,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 세분화

  *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

- **약자동행 실천 정책 개선**

  ·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 지원 절차 간소화

  · 공공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

- **스타트업 및 신산업 지원 규제 완화**

  · 드론 배송, 자율주행차 등의 신산업 시범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 규제 완화

-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 청년수당의 사용 범위를 확대,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등 해외 결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 연령 완화**

  ·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 참여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3) 규제 철폐 정책의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및 건설 경기 회복**

- 용적률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부양

- 공공발주 계약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기업 활동 촉진 및 창업 환경 개선**

- 인허가 절차 단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투자 및 사업 진행 가능
- 창업·스타트업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시민 편의 증대**

-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 온라인·전자 행정 확대를 통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 및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로 혁신 기술 중심 도시로 육성

4) 과도한 규제 철폐 정책의 부작용

○ **난개발 및 환경 문제 발생**

- 용적률 완화로 인해 도시 내 과밀 개발 가능성 증가
- 녹지 및 공원 면적 감소로 인한 도시 환경 악화 우려

○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및 투기 증가**

-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 가능성**

※ 강남 3구·용산구 토허제 지정... 291단지 풀었다가 주택가격 과열로 한 달 만에 2200개 단지 재지정 ('25.3.19 / 조선비즈)

-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가격 불안정 심화

○ **특정 기업 및 대기업 중심의 혜택 집중**

- 공공 발주 절차 간소화가 특정 대기업이나 대형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자치제도과]

1) '24년 전북자치도 규제개혁 추진 현황

○ 민생 및 기업현장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민생 및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219건) 및 개선(30건)
- 도민·전문가 대상 민생규제 혁신공모 발굴(70건)
- 현장방문·옴부즈만·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건의과제 발굴(145건), 개선(12건)

○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공유를 위한 사례발굴·건의(107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2024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4. 9.)

○ 규제혁신 협업체계(도-시·군-중앙부처) 운영

- 등록규제, 도 조례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 등 규제개혁위원회 개최(5회)
- 규제개선 과제 발굴(2회), 자문 및 컨설팅(5회), 공무원 역량교육(2회)

2) 전북자치도 규제개혁 개선 방향

○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 산업이 중심이지만, **최근 신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성장이 확대**되고 있음. 관련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 조례 및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개선 추진**

< 규제개혁 점검 분야(예시) >

분 야	점검 사항
농업·식품 산업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및 친환경 농업기술 도입 절차 규제 점검
관광·문화 산업	관광특구 지정 확대 및 숙박업, 문화시설 관련 설치 규제 점검
창업·소상공인	스타트업, 소상공인 대상 창업 및 자금 조달 등 절차 규제 점검
신산업(친환경·재생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민간 투자 등 절차 점검
물류·유통 산업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행정 규제 점검
교통·기반 시설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설치 제한 등 인프라 관련 규제 점검

○ **주민 및 기업으로부터 상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신설**하여 신속한 규제 혁신 추진, **규제 개혁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 폐지 또는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신산업(스마트팜,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고 성과 분석 후 제도 개선,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규제 완화 확대 시행 검토**

*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3.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경상북도)

◇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휴·폐업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안정 경영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2025. 12월

○ 소요예산 : 36억원(도 18, 시군 18)

○ 규　　모 : 소상공인 300명

○ 사업내용 : 대체 인력(종사자) 인건비 지원 최대 1,200만원
(최대 월 2백만원×6개월)

○ 신청방법 : 모이소 앱

○ 근거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부담 경감)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2 추진실적(24. 12월 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신청) : 152명(174명)　※ 25. 5월까지 접수중

계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교육업	제조업	기타
152	59	44	20	8	7	102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5년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매출액이 년 12백만원 이상
- **직장 및 주소는 사업기간내 유지**

○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동일 목적으로 지원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신청건별로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지원내용 : **출산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연속된 6개월)**

-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연속 6개월 지원 (최대 1,20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는 소상공인과 대체 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보다 높아야 함.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

○ 지원금액 : 선지급 대체인력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

- 지원기간(출산일로부터 ~ 1년): 기간중 연속한 6개월분
(대체인력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인건비 지급 합산 개월 아님)

- 해당월 급여 선지급액 중 월 최대 200만원, 1개월씩 청구하여 6개월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소상공인 본인 1인의 대체인력 사용분에 한함)

4 대체인력 채용대상 및 지원요건

○ **(대체인력 정의)** 대체인력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

-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준수, 4대보험 가입, 이외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4대보험 가입문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대체인력 채용제한)**

- 대체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함

○ **(대체인력 지원요건)**

- **(채용시기)**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2025.12.31.까지 연속된 6개월 기간 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 **(인건비 수준)** 출산 소상공인(배우자)과 대체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고용기간 내 해당연도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함**

*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

* 고용노동부 '25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 10,030원

- **(근로조건)** 주 5일 이하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 근무형태는 전일제, 시간제 근무 모두 가능

- **(제한사항)**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1개 사업체에 1명의 대체인력만 지원하며, 선정된 후 2025.12.31.까지 연속된 6개월 기간을 정하여 고용

○ **(인건비 지급요건)** 근로계약서 및 통장입금 내역서를 확인하고 출산 소상공인(배우자)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북자치도에서 '25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북자치도 육아휴직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부서	예산액	주요내용	비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기업애로해소과	300,000천원(도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합계 200만원) 인센티브 지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여성가족과	36,000천원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저출생 대응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300천원(3개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생명정책과	405,500천원 (도비 101,250, 시군비 263,250, 자부담 40,500)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 30일~출산 후 150일 기간 내 100일간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 지원 최대 9,000천원/1인(100일×90천원)	

○ 서울시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지원사업' 도입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1일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신청 시작일: 2월 17일부터 접수 가능

○ 전북자치도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기침체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전북민생솔루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사업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이는 도지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4.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타지자체의 경우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상담 및 교육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 경영 상담 및 자문 지원
3.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광주상생카드 및 전통시장 상품권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6.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권분석 지원
7. 업종전환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지방세의 감면
10.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1. 제10호의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 지원
1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13.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14.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
15.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자금 지원
1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참고 경상북도 아이보듬 지원사업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계획 수립	ㅇ 도 및 시군 - 세부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확정	'24. 12.
▼		
위수탁협약	ㅇ 경제진흥원 ↔ 시군 - 사업 일정 및 추진방법 협약	'24.12.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ㅇ 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신청(모이소앱), 접수 관리	'25. 1.~'25. 12.
▼		
지원대상 선정	ㅇ 경제진흥원 - 선정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정 통보	수시 (개별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ㅇ 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지급 - 소상공인 매월 청구(모이소앱), 지급	매월
▼		
현장점검	ㅇ 시·군, 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 현장점검 실시(정기, 불시, 특별) - 사업내용 숙지, 부정수급 확인 등	정기점검(1회) 불시·특별점검 (필요시)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ㅇ 경제진흥원 → 시군 → 도 - 지역별 지원규모 및 예산집행 보고 -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파악	~'26. 2.

4. 경남도민연금 도입 (경상남도)

◇ 퇴직 후 소득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사업으로 '경남도민연금'을 2026년부터 도입

1 추진배경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와 노동현장에서의 은퇴시기가 일치하지 않는**'은퇴후 소득공백기'발생**

– 이러한 **소득공백기를 메워 도민의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도입 필요

2 사업 개요(안) ※ 사업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가입자격) 경남도내 거주 & 소득이 있는 자**

– (연령) 만 55세 미만인 자

– (소득) 가입자 소득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기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납입/수령) 월 납입 / 분할수령 ※ 수령 시기 : 만55세 이후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 **(도비지원) 최대 120개월, 월 10천원 지원(정액)**

– 납입기간 동안 경남도민연금(개인형IRP 활용)에 매월 90천원 이상 납입한 도민(매월 주소지 검증)에게 월 10천원 지원

❍ (사업규모) 매년 1만명 모집, 10년차 부터 최대 10만명 유지

❍ (소요예산) 최초연도 12억원, 10년차 부터 120억원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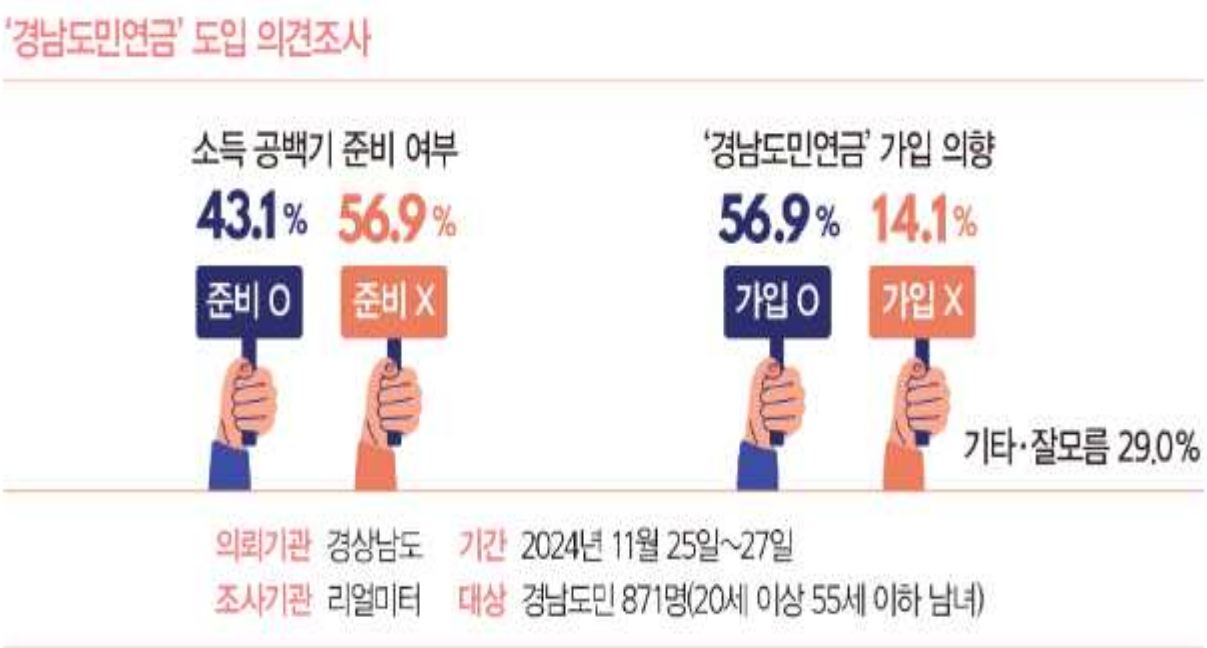
3 향후계획

- ❍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 '25. 6월限
- ❍ 운영 시스템 구축(금융기관) : '25. 11월限
- ❍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 '25. 12월限
- ❍ 도민연금 도입 및 운영 : '26. 1월부터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정책기획관)**

○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며, 2033년이 되면 수급연령은 65세로 늦춰짐

○ 경상남도가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준비하면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56.9%가 소득공백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경남도민의 56.9%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75.5%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77.9%는 소득공백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은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함

*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연령대별 위험관리”, 오병국·변혜원·이소양, 2024.4.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39.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경상남도는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전북자치도에서도 경남도민연금의 도입 및 실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전북 도민들이 퇴직 후 소득공백기로 인한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취득세 감면조례 일몰타당성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24))

《 연구요약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해제로 법적 근거 소멸, 지방세 감면보다 성과연동형 보조금 정책이 더 효율적
◇ 자동차·조선업 외에도 신산업 육성이 필요. 산업단지 지원 정책으로 전환 필요
◇ 대·중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보다 성과 기반 보조금이 효율적. 수혜기업 모니터링 강화로 지원 방식 조정 필요

□ 연구배경

○ 2017년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급격히 침체. 2018년 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입**

○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는「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의2를 신설 **자동차·조선업 제조업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전액 감면**

○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일몰 연장 후, 2023년 12월 31일자로 조례 효력 종료. **감면조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는지 평가하여 일몰 후 대체 지원정책 필요성 검토**

□ 주요내용

1) 감면조례 타당성 분석

○ 법정 타당성

- 법적 근거 소멸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

· **군산은 2018년 4월~2023년 4월 4일자로 지정 종료.**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한 조례의 연장은 불가능**

- 다른 조세 감면제도와의 중복 문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가 이미 존재

· 기존 도세 감면조례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음**

○ 경제적 타당성

- 단기적·제한적 수혜 효과

· 감면조례는 특정 산업(자동차·조선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산업 다각화 정책과 충돌**

· **특정 기업**(엠에스그룹 등) **중심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 전체로의 효과 확산이 부족**

· **군산 경제 전체의 회복보다는 개별 기업의 투자 비용 절감에 그쳤을 가능성**이 큼

- 재정지원 방식(보조금) 대비 비효율성

· **취득세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

· 보조금 정책(예: 지투보조금)은 성과(고용, 생산)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금 회수가 가능

※ GM 군산공장 인수 기업(명신)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

2) 감면조례 효과성 분석

○ 선행연구 분석

- (낮은 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선행연구(오경수 2020, 오나래 2022)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취득세 감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

-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 **54.4억 원의 취득세 감면이 지역 내 생산을 69.5억 원 증가시키고, 21.9명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	감면액(억 원)	생산유발효과(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 원)	취업유발효과(명)
자동차	46.6	58.9	14.4	17.7
조선	7.8	10.6	2.0	4.2
합계	54.4	69.5	16.4	21.9

○ GM 군산공장 사례 분석

- 2019년 GM 군산공장을 엠에스그룹이 인수하면서 **감면조례 혜택을 받았으나 기대했던 고용 및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GM 군산공장 인수 당시 계획 : **900여 명 신규고용, 연간 5만 대 전기차 생산**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과 계약이 무산, **2023년 기준 누적 고용 399명, 차량 생산 3,499대에 그침**

· **지투보조금* 반환으로 정책의 기대효과 대비 실질적 성과 저조**

* 지자체 추자유치촉진지원금 : 기업이 일정한 투자 및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목표 미달성 시 반환이 가능하여 성과 연동형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정책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방세 감면의 한계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불확실성

· 지방세 감면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감면을 받은 기업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보장할 방법이 없음**

- 감면받은 기업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 감면받은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정부(지자체)가 이미 세금을 감면해준 상태이므로 회수가 어려움

· GM 군산공장 인수 기업(명신)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수준의 생산 및 고용 창출을 하지 못함**

→ **감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성과연동형 보조금 정책의 장점

- 성과 기반 지원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
  · 지방세 감면은 선제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지만, 보조금 정책은 성과가 발생한 후 지급되거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에만 지원

<(예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투자유치촉진지원금>

· 기업이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고용 및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음 · 목표 미달성 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가능, 지방재정 손실 방지

-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실시간으로 평가 가능**
  · 보조금 지원 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원 후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예시) 군산 GM 공장 인수기업(명신)의 보조금 사례>

· 2019년 640명 신규 고용 및 1,040억 원 설비투자 계획을 제시하여 125억 원의 지투보조금을 신청 · 실제 투자금은 계획의 10% 수준(100억 원) 불과, 고용 목표도 399명에 그쳐 보조금 일부 반납

  · 지방세 감면 혜택만 제공했다면 이러한 회수가 불가능

- 특정 기업이 아닌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맞춤형 지원 가능
  · 지방세 감면은 **특정 업종(자동차·조선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성과연동형 보조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신산업 기업에도 지원 가능**

<(예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투자>

· 룽바이그룹, 넥세온 등의 신산업 기업들이 성과 기반 보조금 정책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 다각화에도 기여 가능

- 정책 실패 회복 가능성과 지방재정 건정에도 유리
  · 감면조례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해당 기업에 자동 적용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

· 성과연동형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지방세 감면, 성과연동형 보조금 효과성 비교>

비고 항목	지방세 감면 정책	성과연동형 보조금 정책
지원 방식	세금 부담 경감(선지원)	성과 달성 후 보조금 지급(후지원)
지역경제 기여	감면받은 기업이 지역경제 기여를 안 해도 감면 유지됨	성과 미달성 시 지원금 회수 가능
산업 다각화 가능성	특정 업종(자동차·조선업) 중심	다양한 산업(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지원 가능
재정 안정성	감면이 계속되면 세수 부족 가능	예산 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 가능
기업 성과 반영 여부	기업 성과와 무관하게 세금 감면 유지	기업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결론 / 시사점

○ 자동차·조선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낮고, 고용 창출 효과도 제한적**

○ 감면 정책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작동하여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음. 신산업(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취득세 감면보다는 성과연동형 보조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 및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5.02.)]

≪ 연구요약 ≫

◇ 기후변화 양상과 사회·지리적 취약계층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범주, 정부의 역할 등 법률적으로 명시가 필요함

◇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발굴이 필요함

□ 연구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

* 온열·한랭질환자 중 고령자·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 피해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특성 강화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위기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을 의미함. 기후위기 악화로 피해가 다양해지면서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요약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현황

○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중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부문의 예산 비중은 높은 편이나, 대부분 에너지비용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6.)의 2023~2025년간 재정투자 규모는 총 23.1조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관련은 약 2.1조원(9.3%) 차지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관련 재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1조 4,183억원(66.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3,326억원(15.5%),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999억원(9.3%) 등 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됨

[표 4]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취약계층 보호 세부사업

(단위: 억원, %)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주요 내용	'23~'25년 투자계획	비중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변화 중점 관리지역 입지선정 등	21.5	0.1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 사업 등	295	1.4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취약계층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등	125	0.6
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1,054	4.9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416	1.9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999	9.3
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소외계층에 에너지 비용 지원	14,183	66.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	3,326	15.5
합계			21,420	100.0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세부시행계획」, 2023.9.

○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재난 및 피해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사업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함**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2024.5.) '기후위기취약계층 등에 국가적 보호 강화' 과제의 우수 사업 비율은 45.5%로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32.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임

[표 5]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단위: 개, %)

4대 정책	12대 추진과제	세부과제별 평가 결과				
		우수(a)	보통	미흡	소계(b)	비중(a/b)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10	21	-	31	32.3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8	5	-	13	61.5
기후재난·위험 극복 안전사회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18	15	-	33	54.5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14	4	-	18	77.8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 예방 강화	17	8	-	25	68.0
적응사회 기반 구축	•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6	5	-	11	54.5
	•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 조성	13	1	-	14	92.9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29	14	-	43	67.4
	• 생태계 안전성 유지	36	15	-	51	70.6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국가적 보호 강화**	5	6	-	11	45.5
	• 기후재난 대응역량 제고	8	3	-	11	72.7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	27	4	-	31	87.1
합계		191	101	-	292	65.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2.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 검토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법률적 명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에 포함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관련 내용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 지역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그치고 있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주, 정부 역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취약계층 보호대책 발굴과 추진력을 담보할 필요

3.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발굴

○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발굴** 필요

-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의 기후변화 양상에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와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지역별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 강화 필요

  * 정부는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 조사를 거쳐, 지역별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 마련('25년), 지자체 실태조사 확대(~ '27년)를 계획하고 있음

○ 효과적인 지역별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지자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환경부는 2021년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폭염대응 쉼터 설치 등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사업 유형이 폭염대응 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제안사업 선정은 미미한 수준임**

[표 7]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건)

유형	폭염대응 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결빙취약지 개선	소규모사업장 적응인프라	녹색공간 조성	물순환 회복	야외근로자 이동식쉼터	지자체 제안	합계
건수	26	30	5	2	8	1	7	1	80

자료: 환경부

○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사업 지원 유형 및 지자체 제안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의 컨설팅 지원강화 등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시사점 및 검토의견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 특히 '저소득 주거취약노인'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전반적으로 드러남.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폭염) 피해가 더 많이 보고됐는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역 및 정주환경 차원의 중장기 기후회복력 증진** 등의 정부 노력이 필요함

○ 차상위계층의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차상위 노인 가구, 차상위 영유아 가구 등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이 요구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1)]

○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와 제22조**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및 2050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50122)

○ 따라서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 1기 탄녹위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노동계·임업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계대표성 보장 필요

○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1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한국환경연구원,'25.02)

□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서울·부산 기후취약계층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7.5%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였고, 49.3%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최대 폭염피해 취약계층, 쪽방 거주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을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25년 정부는 조사 지역을 넓혀 홍수피해 등 2차 실태조사 추가 진행 예정임)

※ 기후위기 취약계층 1차 조사 (시범지역 2곳)

- 조사 목적 :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규명 및 실태 파악
- 조사 기간 : 2024년 8월 ~ 2025년 1월
- 조사 방식 : 서울과 부산 주거 취약계층 등 1,400명, 폭염집중관리지역 거주자 1,000명 총 2,400명 대상 현장조사
- 조사 문항 : 144개 복합유형의 기후취약성 분석 등

□ 주요 실태조사 결과

① 기후위기,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직격탄'

- '기후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따라 새로 대두된 취약계층으로, 기존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부 교집합이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을 교차해 규정해야 함

* (기후취약계층 폭염피해 현황) ▲경제적피해 67.5%, ▲사회적고립경험 49.3%, ▲폭염관련 정보 미수신 11%, ▲온열질환 경험 8.5%

** **폭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쪽방이나 에어컨 미보유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분석됐다. 또 여러 취약성 가운데 주거 취약성이 폭염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② 67.5% '경제적 피해' 경험, 기저질환 보유 노인은 의료비용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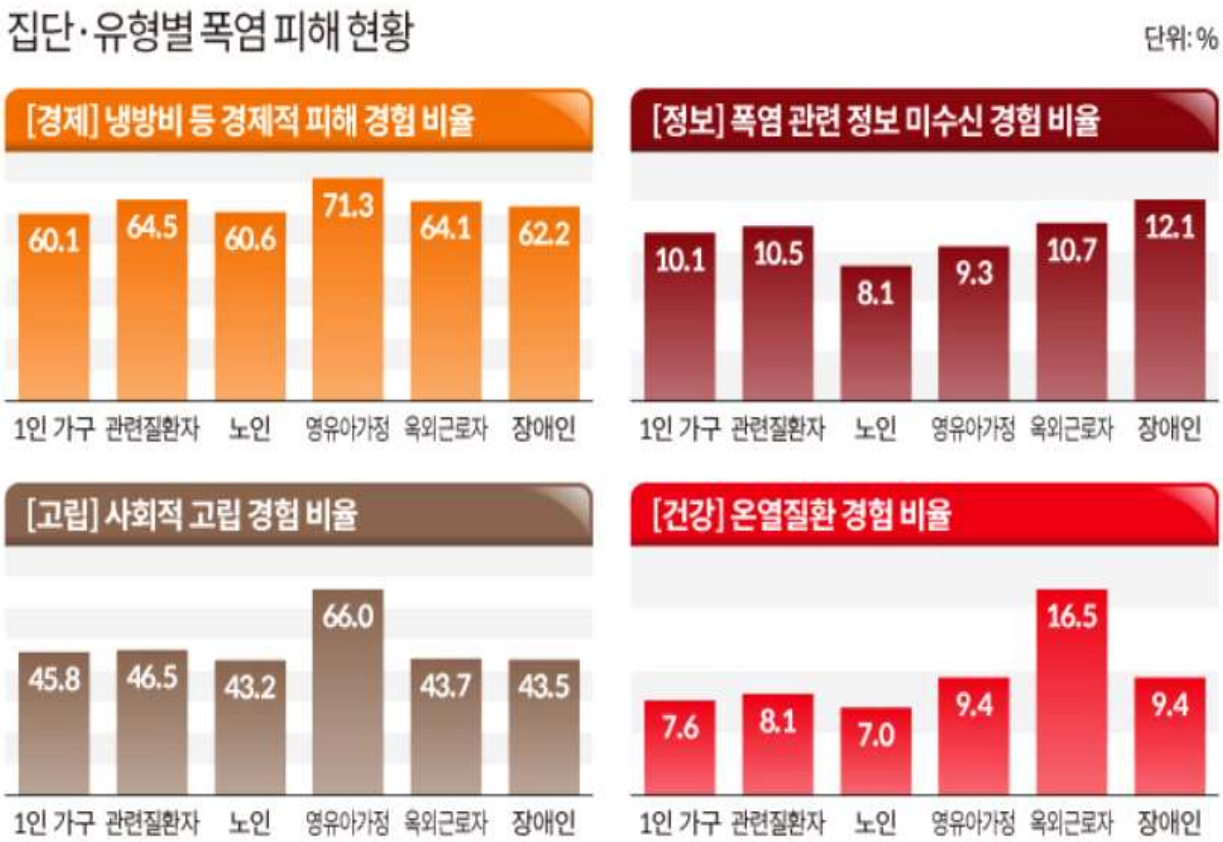
- 냉방비와 물가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기후취약계층은 67.5%에 달함. 의료비용 증가(21.5%), 직장소득 감소(13.1%), 농산물 등 생산물과 자산피해(4.6%) 등 순임

* 직장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특히 영유아 가정이나 옥외근로자 집단 등에서 상승한 경향이 관측됨. 1인 가구, 관련 질환자, 노인 등은 복합 취약성이 높을수록 의료비용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③ 건강 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8.5% '온열질환 진단 경험' 응답

- 기타, '폭염으로 거동 불편 악화' 응답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1%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관련질환자(78.9%)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78.3%),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에어컨을 보유하지 않은 노인(84.2%), 노후주택 거주 노인(83.1%) 등이 거동에 불편을 겪음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뉴스핌 보도자료(250219) 참고>

④ 저소득 및 주거취약 영유아가정 기후변화 피해 사례가 발굴됨. 조사 대상 영유아 가정 중에는 한부모이면서 저소득 및 주거 취약 영유아 가정인 경우가 적잖았는데, 폭염으로 소득의 약 40%에 달하는 경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와 더불어 노후주택 영유아가정과 차상위계층 영유아가정 등 사회적 고립 사례가 발굴됨

참고2 기후위기 취약계층 제도개선 결정문 (국민권익위원회,'25.0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제 목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1. 환경부장관에게,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규정할 것,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것,

다. 실효성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것,

라. 노인, 장애인, 아동,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홍보의 실시, 오프라인 방식의 정보제공 병행, 디지털 기기구입 지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마. 기후대응기금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대통령에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구성 시 추천 및 위촉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에서 노동자, 농어민을 포함하는 등 다양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취약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2050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구성 시, 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에서 노동자, 농어민을 포함하는 등 다양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략>

3. 아파트 간이 및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소방호스 전개 시간 분석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요약 ≫

◇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호스방식 호스릴 옥내소화전과 간이 옥내소화전의 소방전개 시간에 따른 초기 화재 예방 효율성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재의 건축물은 복합화 대형화 또는 거주 인원의 증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며,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하지 못할 경우 화재 확대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함

○ 또한,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하지 못한다면 연소 확대로 인하여 많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하며 옥내소화전설비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호스 방식은 호스 전개 및 앵글밸브 조작시 호스 막힘, 호스의 꼬임, 펌프 불량 등으로 초기에 작동하지 못해 진압에 실패 할 문제점들이 있음에 따라, 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통해 혼자서도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선하였음

○ 하지만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도 화재 발생시 옥내소화전함에 있는 호스를 전개하고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와 **간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사용 실험을 통해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위한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음

□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개념

○ 호스릴 방식의 경우는 노유자나 여성의 사용이 간편한 구조로 **호스가 평상시 원형을 유지하여 꼬임이나 꺾임이 없고** 소화수의 막힘이 없이 **1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화재지점으로 가기 전 앵글밸브를 미리 개방 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가 가능**하지만,

○ 방수량이 기존의 호스 방식보다 비교적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호스형 소화전에 비해 호스 구경을 (25mm) 작게 하여 아파트 노유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방식으로,

○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가 가능하며 사용시나 보관 중에 호스 단면이 항상 원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구경 25mm 길이로 사용되고 있음

□ 간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개념

○ 간이 옥내소화전은 아파트 세대 내부 **화장실 급수 배관과 연결**하여 급수 배관을 따라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 소화수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기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세대 화장실 전용 간이 옥내소화전**을 말함

○ 급수 배관은 세대로 공급되는 수도물의 상류 쪽의 세대 공급 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폴리부틸렌 수지 재질로 나사식으로 된 주름관에 삽입된 상태에서 고정 회전시켜 조이는 방식으로 호스를 수평 방향으로 하여 노즐의 회전을 통해 소화수가 방사되는 방식임

○ 세대 전용 간이소화전은 **세대 내부 화재의 초기 진압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세대 인원 누구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호스릴 옥내소화전 및 간이 옥내소화전설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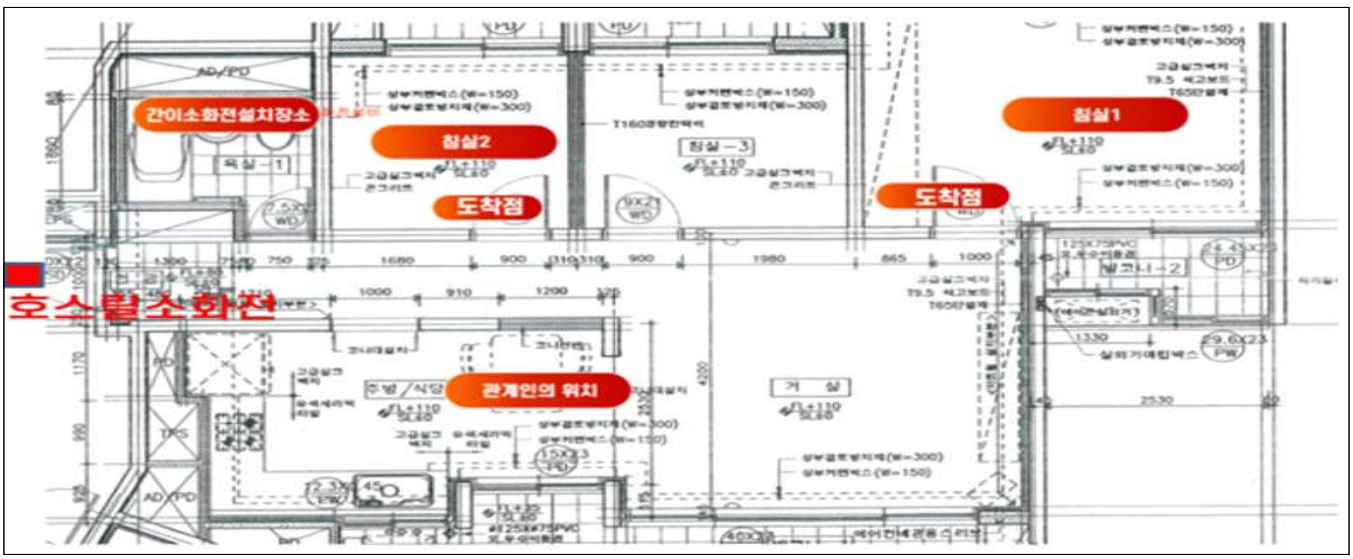
※ 급수배관, 나사식 소방호스, 노즐

□ 실험시나리오

○ 이 실험은 2024년 6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진행되었고, 대상물의 구조는 지상 1층, 지상 30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아파트 15층 세대 주방, 거실, 침실1, 침실2 구조에서 실험을 진행함

○ 간이 옥내소화전은 자체 제작하여 아파트 세대 화장실 급수 배관에 연결하였고, 호스릴 옥내소화전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파트 복도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아파트 평면도는 다음과 같음

< 아파트 평면도 >



□ 소방호스 전개 시간 및 종합 분석 결과

○ 침실 1의 간이 옥내소화전과 호스릴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전개에 따른 시간의 비교를 살펴보면 호스릴 옥내소화전보다 간이 옥내소화전은 최소 19초, 최대 27.5초로 빠르게 소방호스를 전개한 것으로 나타남

○ 소방호스 전개시간이 **20초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도에 설치한 **호스릴 옥내소화전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시간과 신속성, 방화문을 개폐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간이 옥내소화전**은 **세대 화장실에서 호스를 쉽게 전개하는 것으로 전개시간에 차이**를 보임

○ 또한,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관계인의 성격과 민첩한 행동, 소방안전교육 이수, 훈련, 평소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사용 요령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해 소방호스 전개시간의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소방호스 전개시간의 차이는 간이 옥내소화전과 호스릴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전개시간을 비교한 결과 간이 옥내소화전의 소방호스 전개시간이 적게 걸리는 원인은 세대에 설치하는 간이 옥내소화전의 소방호스 전개 시간 단축의 사용 편리성과 신속성 등으로 1인 사용 적합성, 호스 압력, 시간, 호스 무게, 문 개방 시간, 방사 시간, 화재 진압성, 피해 정도, 호스 전개 속도, 방화문 개폐 여부, 이동 시간 등으로 사용이 보다 편리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복도에 설치한 호스릴 옥내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방화문 개폐와 이동시간, 소방호스 전개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화장실에 설치한 간이 옥내소화전 방식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며,

○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실내 화장실에 간이 옥내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1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릴 형태로 호스를 전개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소방대가 현장 도착 전에 관계인이 간이 옥내소화전의 소방호스로 신속하게 전개하는 것이 인명구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거리에 따른 소방호스 전개 시간 비교 >

참여자	성별	연령	횟수	간이(s)(욕실)			호스릴(s)(복도)			소방호스전개시간 비교 호스릴(s)-간이(s)		
				침실 1	침실 2	소계	침실 1	침실 2	소계	침실 1	침실 2	합계
				6m	11m		11m	16m				
A	남	20대	1회	16.1	10.8	27.0	35.5	24.5	60.1	19.4	13.6	33.0
			2회	15.2	10.5	25.8	34.8	24.0	58.8	19.6	13.5	33.1
			3회	14.9	10.3	25.3	34.5	22.9	57.5	19.6	12.6	32.2
			4회	15.2	10.3	25.5	33.3	22.6	55.9	18.1	12.3	30.4
			5회	14.5	10.0	24.5	33	22.2	55.2	18.5	12.2	30.7
			평균	15.2	10.4	25.6	34.2	23.2	57.5	19	12.8	31.8
B	여	20대	1회	19.6	11.1	30.7	41.1	30.2	71.4	21.5	41.3	40.6
			2회	19.2	10.9	30.1	40.8	29.6	70.4	21.6	18.7	40.3
			3회	18.5	10.2	28.7	40.3	28.9	69.3	21.8	18.7	40.5
			4회	17.9	10.1	28.1	39.5	28.1	67.6	21.6	18	39.6
			5회	17.5	10.2	27.8	39.2	28.0	67.2	21.7	17.8	39.5
			평균	18.5	10.5	29.1	40.2	29	69.2	21.7	18.5	40.2
C	남	30대	1회	13.0	10.9	24.0	29.7	24.8	54.5	16.7	13.9	30.6
			2회	12.7	10.5	23.2	29.1	24.0	53.2	16.4	13.5	29.9
			3회	12.4	9.3	21.7	28.8	23.4	52.3	16.4	14.1	30.5
			4회	12.0	9.5	21.5	28.6	23.1	51.7	16.6	13.6	30.2
			5회	11.4	8.8	20.3	27.9	22.3	50.2	16.5	13.5	30
			평균	12.3	9.8	22.1	28.8	23.5	52.4	16.5	13.7	30.2
D	여	30대	1회	17.5	10.7	28.2	41.3	36.1	77.4	23.8	25.4	49.2
			2회	16.4	10.1	26.5	40.5	35.5	76.0	24.1	25.4	49.5
			3회	16.0	9.25	25.2	40.2	35.2	75.4	24.2	26	50.2
			4회	15.3	9.17	24.4	39.3	34.8	74.1	24	25.7	49.7
			5회	14.7	9.21	23.9	39.2	34.7	73.9	24.5	25.5	50
			평균	16	9.7	25.7	40.1	35.2	75.4	24.1	25.5	49.6
E	남	40대	1회	18.2	14.5	32.7	44.6	36.8	81.5	13.6	22.3	48.8
			2회	17.8	14.0	31.9	44.5	36.7	81.3	26.7	22.7	49.4
			3회	17.3	13.5	30.8	44.2	35.9	80.0	26.9	22.4	49.2
			4회	16.9	13.0	30.0	43.7	35.8	79.5	26.8	22.8	49.5
			5회	16.8	12.4	29.2	43.2	35.45	78.6	26.4	23	49.4
			평균	17.4	13.5	30.9	44.0	36.16	80.2	26.6	22.6	49.3
F	여	40대	1회	17.7	14.3	32.1	39.2	32.5	71.7	21.5	18.2	39.7
			2회	17.3	13.8	31.1	38.4	32.3	70.8	21.1	18.5	39.6
			3회	16.7	13.5	30.2	38.2	31.7	66.9	21.5	18.2	39.7
			4회	16.1	12.2	28.3	37.8	31.1	75	21.7	18.9	40.6
			5회	15.8	12.8	28.6	37.4	31.2	68.6	21.6	18.4	40
			평균	16.7	13.3	30.1	38.2	31.8	70.0	21.5	18.5	40
G	남	50대	1회	25.1	17.5	42.7	52.3	45.3	97.6	27.2	27.8	55
			2회	24.6	18.1	42.8	51.8	45.1	96.9	27.2	27	54.2
			3회	23.9	16.9	40.9	51.2	44.7	95.9	27.3	27.8	55.1
			4회	23.2	17.0	40.2	50.9	44.5	95.4	27.7	27.5	55.2
			5회	22.7	16.8	39.5	50.6	44.1	94.7	27.9	27.3	55.2
			평균	23.9	17.3	41.2	51.4	44.7	96.1	27.5	27.4	54.9

참여자	성별	연령	횟수	간이(s)(욕실)			호스릴(s)(복도)			소방호스전개시간 비교 호스릴(s)-간이(s)		
				침실 1	침실 2	소계	침실 1	침실 2	소계	침실 1	침실 2	합계
				6m	11m		11m	16m				
H	여	50대	1회	19.1	11.9	31.0	39.6	31.5	71.1	20.5	19.6	40.1
			2회	18.4	11.3	29.8	39.1	31.2	70.3	20.7	19.9	40.6
			3회	18.2	11.2	29.4	38.9	30.5	69.4	20.7	19.3	40
			4회	18.2	10.7	29.0	38.2	31.1	69.3	20	20.4	40.4
			5회	17.4	10.5	27.9	37.9	29.9	67.9	20.5	19.4	39.9
			평균	18.2	11.1	29.4	38.7	30.8	69.6	20.5	19.7	39.2
I	남	60대	1회	18.3	16.2	34.5	40.2	30.8	71.1	21.9	14.6	36.5
			2회	17.5	15.7	33.2	39.7	30.1	69.9	22.2	14.4	35.8
			3회	17.2	15.4	32.6	39.3	29.5	68.8	22.1	14.1	36.2
			4회	16.8	14.9	31.8	38.7	29.7	68.4	21.9	14.8	36.7
			5회	16.6	14.7	31.4	38.6	29.6	68.3	22	14.9	36.9
			평균	17.3	15.0	32.3	39.3	29.9	69.3	22	14.9	36.9
J	여	60대	1회	20.7	18.3	39.0	47.5	44.4	91.9	26.8	26.1	52.9
			2회	20.4	17.6	38.0	47.0	43.5	90.5	26.6	25.9	52.5
			3회	19.8	17.4	37.2	46.2	43.0	89.2	26.4	25.6	52
			4회	19.4	17.2	36.6	45.9	43.1	89.0	26.5	25.9	52.4
			5회	18.9	17.0	35.9	45.1	42.7	87.9	26.2	25.7	51.9
			평균	19.8	17.5	37.3	46.3	43.3	89.7	26.5	25.8	52.3

□ 시사점

○ 이 연구는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 하기 전 재실자가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기 위하여 세대 내부에 설치된 간이 옥내소화전설비를 화점에 빠르게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실험대상자 20 ~ 60대 남, 여 10명을 선발하여 간이 옥내소화전과 호스릴 옥내소화전에서 침실1, 침실2까지 소방호스 전개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고,

○ 소방호스 전개 방법에서 화장실에 설치한 간이 옥내소화전이 가장 신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호스 전개 사용의 편리성 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석되었음

○ 아파트 화재는 실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초기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실내에 간이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간이 옥내소화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간이 옥내소화전은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에 1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실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강화 프로그램 마련, 소방서와 실내 화재진압 훈련 교육이 필요하며,

○ 세대 내에는 개인의 주거에 해당하여 원활한 소방점검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화재 발생 전 화재 예방을 위해 세대 내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시로 간이 옥내소화전 점검을 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4.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연구요약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은 현행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보다 '1인당 주업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 필요

Ⅰ. 서 론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붕괴되었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을 최저점으로 반등하여 2036년에는 1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21년 추계에서는 2024년 0.7명을 최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25년을 최저점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됨

○ 저출생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 저출생으로 인해 총인구는 2020년 51,836,239명을 정점으로 감소
- 2021년 인구추계에서는 2040년 인구가 현재보다 1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2023년 인구추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178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
- 특히 0~14세 인구는 현재보다 5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구조에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됨.

○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0~14세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20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전일제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추진하며,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규 교원 수급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 저출생에 따른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 계획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저출생 시대에 맞춰 교원 수급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Ⅱ. 교원수급계획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2024)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연평균 3.6% 씩 감소**하게 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연평균 7.0%씩 감소**하여 2029년 초등학생 수는 2024년보다 약 7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2029년까지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감소 폭은 **연평균 0.1%~1.5%** 수준으로 초등학교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학생 수 변화를 감안하여 **교육부**에서는 **신규 채용규모**를 **2023년 대비 약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였음.

-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3,561명이던 초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6~2027년에는 2,600~2,900명 내외로, 2023년 4,898명이던 중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에 3,500명~4,0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임

- 교육부는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교사는 12.4명**으로 2023년 기준 15.4명보다 3.0명 감축할 수

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2027년은 2023년 11.8명보다 0.5명 증가한 **12.3명**으로 예상

※ OECD 평균(14.4명)

Ⅲ. 교원수급계획의 문제점

1. 평균의 함정 문제

○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정규직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교사의 경우 0.5명 감소하였고, 중등교사의 경우 0.2명 증가함.

○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특수지는 특별·광역시 및 시 단위에서 차이가 있음.

- 특별·광역시의 **초등교사**는 1인당 학생 수가 14.7명에서 14.6명으로 0.1명 감소하는 수준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14.1명에서 14.3명으로 0.2명 증가하였음.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는 **읍·면·특수지에서 0.6명 감소**하였기 때문임

- **중등교사**의 경우에도 **읍·면·특수지에서 0.2명 감소**했을 뿐, 특별·광역시 및 시 단위에서는 0.2~0.3명 증가하였음.

○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비보직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1인당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초등교사의 경우 지난 3년간 23.3명 수준이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21.7명에서 22.6명으로 4.1% 증가하였음.

- **초등교사**의 경우 정규직 교사 수는 3년간 0.2% 증가하였지만,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비보직 교사는 2.7% 감소하였고, 영양, 사서, 보건 등 비교과 교사가 9.5% 증가하였음. 이는 정규직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는 통계적 현상과 달리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등교사**의 경우에도 비교과 교사 수가 8.2% 증가하였지만,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비보직 교사의 수는 5.8% 감소**함에 따라 정규직 1인당 학생 수 증가보다 큰 폭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평균적으로는 적정 규모로 교원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나 정규 수업담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열악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거나 **업무 부담이 가중**됨

2. 교사 부족에 따른 수업 시수 증가

○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2023년 발표한 **중장기 초·중등 교원수급 계획**에서는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인재 양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및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함**

- 저출생에 따른 축소사회에 맞춰 신규 교사 채용을 감축하는 것은 교사의 실질적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급을 관리함에 따라 교사 부족에 따른 수업시수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표 6>을 통해 확인됨.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살펴보면 평균의 함정 등으로 전체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는 19.03시간에서 18.89시간, 중학교는 16.06시간에서 15.88시간, 고등학교는 15.79시간에서 15.49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보직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20.25시간에서 20.39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 특히 **가장 많은 수업시수 교사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2~24시간으로 해당 구간의 비중이 58.06%에서 **61.22%로 증가**하였음.

- 이는 중·고등학교의 가장 많은 수업시수 교사 분포가 중학교(19~21시간 구간)는 45.43%에서 43.42%로, 고등학교(16~18시간 구간)는 75.00%에서 73.00%로 감소한 점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최근 5년간 학교 유형별 교원 주당 수업시수 및 시수별 비율

(단위: 시간, %)

구분		주당 평균 시수*		9시간 이하	10~12 시간	13~15 시간	16~18 시간	19~21 시간	22시간 이상			
		전체	비보직 교사							22~24 시간	25~27 시간	28시간 이상
초등학교	2023년	18.89	20.39	14.86	0.35	0.72	1.99	15.65	66.43	**61.22**	4.22	0.98
	2022년	18.93	20.26	15.08	0.94	1.31	1.87	15.79	65.00	**59.31**	4.37	1.32
	2021년	18.87	20.36	14.86	0.37	0.68	2.54	17.25	64.30	**57.79**	5.08	1.42
	2020년	19.11	20.44	15.67	0.33	0.62	2.22	16.28	64.88	**54.87**	7.21	2.80
	2019년	19.03	20.25	16.09	0.29	0.50	2.20	16.51	64.41	**58.06**	4.99	1.35
중학교	2023년	15.88	16.68	15.90	4.10	5.97	30.62	**43.42**	39.01	4.25	0.13	0.03
	2022년	15.98	16.55	16.90	4.27	6.00	30.98	**41.85**	37.28	4.39	0.16	0.01
	2021년	16.06	16.68	16.24	4.34	5.98	29.71	**43.73**	38.55	4.93	0.22	0.02
	2020년	15.95	16.52	16.92	4.73	6.30	29.97	**42.08**	37.23	4.67	0.16	0.02
	2019년	16.06	16.63	17.47	4.55	5.99	26.56	**45.43**	39.65	5.54	0.22	0.03
고등학교 (일반)	2023년	15.49	16.01	12.90	1.96	12.14	**73.00**	52.68	19.30	0.97	0.05	0.00
	2022년	15.64	16.14	13.37	1.79	10.39	**74.45**	51.25	22.01	1.13	0.05	0.01
	2020년	15.63	16.09	12.77	2.06	11.82	**73.35**	51.54	20.27	1.42	0.10	0.02
	2019년	15.79	16.23	12.61	1.85	10.55	**75.00**	50.96	22.37	1.59	0.07	0.01

* 주당 평균 수업시수: 9시간 이내는 9시간, 28시간 이상은 28시간으로 가정하고, 각 구간별 중간값(10~12시간은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숫자로 실제 수업시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등학교 2021년 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에서 공개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여 파악할 수 없음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이처럼 현재 교육부에서 교원수급계획 수립 시 기준인 교사 1인당 학생 수 체계는 **현장의 교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시수 증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출생 시대라는 이유로 신규 교사 수급을 줄인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3. 교사 이탈에 따른 악순환 고리 형성

○ 현재 교권에 대한 문제와 학생 지도와 관련된 이슈(학교폭력, 다문화 학생 증가 등)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신도시·재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 읍·면·특수지 등 소규모 학교에 최소 규모의 교원이 배치되지 못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직 교사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음.

○ **정규직 교사의 부족**은 재직 중인 **교사의 업무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켜 교사의 이탈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표 7>과 같이 **현장에서는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비정규직 교원이 5년간 86.9% 증가**하여 2020년 4.5%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2024년 8.1%로 증가하였음.
- 직접적으로는 교사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간접적으로는 결원분을 계약직 교사로 대체함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정규직 교사에게 집중됨

〈표 7〉 최근 5년간 계약 유형별 교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비율 (2020-2024)
전체	총 교원 수	498,281	500,859	507,793	508,850	509,242	2.2
	정규교원 수	440,505	438,865	437,736	432,216	425,509	-3.4
	비정규교원 수	57,776	61,994	70,057	76,634	83,733	44.9
	비정규직 비율(%)	11.6	12.4	13.8	15.1	16.4	-
초등학교	총 교원 수	189,286	191,224	195,037	195,087	196,598	3.9
	정규교원 수	180,814	181,658	183,436	182,038	180,766	0.0
	비정규교원 수	8,472	9,566	11,601	13,049	15,832	86.9
	비정규직 비율(%)	4.5	5.0	5.9	6.7	8.1	-
중학교	총 교원 수	111,894	113,238	115,673	114,800	114,780	2.6%
	정규교원 수	93,216	93,149	92,725	91,505	89,700	-3.8%
	비정규교원 수	18,678	20,089	22,948	23,295	25,080	34.3%
	비정규직 비율(%)	16.7	17.7	19.8	20.3	21.9	-
고등학교 (일반)	총 교원 수	89,666	91,448	93,555	94,316	92,514	3.2%
	정규교원 수	74,017	74,569	74,539	73,880	71,160	-3.9%
	비정규교원 수	15,649	16,879	19,016	20,436	21,354	36.5%
	비정규직 비율(%)	17.5	18.5	20.3	21.7	23.1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최근 3년간 교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채용과 복직으로 충원된 인원에 비해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의 증가 규모가 더 커서 **현장의 인원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표 8>과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결원과 충원의 차이가 2020년 6,682명에서 2022년 8,876명으로 나타나 부족한 규모가 32.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학교는 3,454명에서 4,068명으로 17.8%, 일반계

고등학교는 3,400명에서 3,551명으로 4.4% 증가하였음.

- 실제 **교권이나 학생 지도 문제, 과밀학급 문제와 소규모 학교 문제**가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교원의 퇴직과 휴직을 부추기면서 초등학교에서 결원과 충원의 차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8〉 최근 3년간 교원 변동 현황

(단위: 명)

구분		신규 채용(A)	퇴직 전체(B)	퇴직 정년	퇴직 명예	복직 (C)	휴직 (D)	결원 (B+D)	충원 (A+C)	인원차 (A+C)-(B+D)
초등학교	2022.04.02.~2023.04.01.	2,950	4,005	1,313	2,163	4,664	12,485	16,490	7,614	-8,876
	2021.04.02.~2022.04.01.	4,082	3,286	1,022	1,835	4,435	13,233	16,519	8,517	-8,002
	2020.04.02.~2021.04.01.	3,135	2,823	733	1,705	4,898	11,892	14,715	8,033	-6,682
중학교	2022.04.02.~2023.04.01.	3,241	3,810	1,327	2,180	2,089	5,588	9,398	5,330	-4,068
	2021.04.02.~2022.04.01.	3,081	3,736	1,148	2,286	1,893	6,063	9,799	4,974	-4,825
	2020.04.02.~2021.04.01.	3,158	3,298	955	2,112	2,144	5,458	8,756	5,302	-3,454
고등학교 (일반)	2022.04.02.~2023.04.01.	1,790	2,813	1,159	1,436	1,838	4,366	7,179	3,628	-3,551
	2021.04.02.~2022.04.01.	1,812	2,893	986	1,517	1,595	4,670	7,563	3,407	-4,156
	2020.04.02.~2021.04.01.	1,664	2,598	879	1,455	1,675	4,141	6,739	3,339	-3,4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Ⅲ. 개선 방향

○ 교원 수급을 특정 시기에 증가, 감축시키는 일은 향후 몇 년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간 넓은 시야로 준비해야 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증가하고, 교사의 이탈 등으로 비정규직 충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보다 저출생 현상에만 집중하여 기계적으로 신규 교사 수급을 감축한다면, 일본·독일의 사례처럼 베이붐 세대 교사의 대규모 퇴직 등으로 교사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수급계획 수립 시** 현행 '1인당 학생 수'에서 **'1인당 주당 수업시수'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22시간 이상 수업하는 교사가 최근 5년간 2.02%p 증가(2019년 64.41% 2023년 66.43%)하여 교사 과잉이라는 논란이 무색

한 상황이므로, 교사 1인당 수업 시수의 상한을 정해(예: 22시간) 교원 수급계획의 변화를 실질적인 수업 시수와 연동시켜 정책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방식의 적용은 과밀학급이나 읍·면·특수지 등 소규모 학교 문제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과밀학급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상한**을 평균(23시간)보다 3시간 낮춘 **주당 20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재건축, 신도시 건립 등에 따라 일정 기간에만 과밀학급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어, 물리적인 학급 수 증가 없이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임.
-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여러 과목 및 학년을 담당하는 점,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증가하는 행정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당 수업 시수 상한을 현행보다 낮춘**다면, 소규모 학교에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 폭력, 학부모 상담, 다양한 유형의 학생 지도, 처리해야 할 각종 행정업무 증가 등 최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23시간(초등학교 교사의 최빈값 기준)의 주당 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AI 및 디지털 교육, 개별화된 교육, 교육선택권 보장,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 가구 증가 등 저출생 및 축소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까지 낮추는 것이 요구**됨.

○ 아울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제5조(연가)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교원의 휴식권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휴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변화에 맞춰

휴가 사유를 보고하는 행위조차 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도 맞지 않으며, 최근 공직사회에서 연차휴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특별 휴가를 부여하려는 변화에도 역행.

-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등 여러 정신적 어려움과 누적된 피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위한 기회를 제한함에 따라 교직이 매력적이지 않은 일터가 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주당 수업시수와 일선 교사의 휴식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적정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며 교직 매력도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미래 사회에 유능한 인재가 교직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음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대규모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계획변경 적정설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맞춤형 농지지원(융자)의 내역사업**이며, **2025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20억원 감소한 18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맞춤형농지지원(융자)	844,915	1,241,260	1,113,440	△127,820	△10.3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5,448	30,000	18,000	△12,000	△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착수한 2개 단지의 2년차 사업비용으로, 2024년에는 2개 단지에 대한부지매입 비용 전액과 기반조성 비용의 10%가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기반 조성비용의 90%가 편성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도 사업의 계속수행 물량 외에 신규조성 물량은 편성되지 않음

나. 분석의견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국회확정 당시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부지 임대·매각을 목적으로 2개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계획안의 국회확정 직후 주된 지원대상을 농업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문제가 있음**

- 본 사업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023년 신규편성되어 최초 추진**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 확보 및 진입로, 용·배수로 등 스마트팜 설치 기반 조성을 실시하고, 청년농에게 장기간(30년) 임대 또는 임대 후 매각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됨

- 2024년 9월 기준, 전체 농업스타트업단지의 입주율은 85.7%로 미입주 물량은 임대차계약 완료 이후 발생한 2명의 계약 포기로 인해 공실이 발생에 따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현황(2023년 사업분)]

(단위: 백만원, ha, 개, 명)

구 분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합계
조성사업비(부지매입, 기반조성)	2,451	2,953	5,404
부지 조성규모	3.2	4.5	7.7
스마트팜부지 구획 수	6	8	14
입주현황(30년 임대)	5	7	12

주: 2024. 9. 26. 현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정부는 2024회계연도 시작 직후 사업명을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로 변경**하고, 스마트팜 구축용 농지를 청년농에게 임대하거나 임대 후 매각하려던 종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농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

- 최종적으로 농업법인이 민간투자를 받아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한 농지를 매입한 후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고 부지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여 청년농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이후 2024년 6월에 본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출 승인이 있었고, **2024년 7월에 최종적으로 2개 지자체(전북 남원, 전남 고흥)가 선정**됨

-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사업을 통해 기조성된 스마트팜의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4·2025년 사업물량이 2023년 대비 대폭 확대되는 상황(7.7→40ha, 419.5% 증가)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을 **기존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농업법인 지원’으로 변경**함

[기존 청년창업형스타트농업단지 사업과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사업 비교]

구분	청년창업형스타트농업단지 (당초 추진내용)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변경 추진내용)
목적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대상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 지정, 농업기반 정비 후 임대·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안정적 정착 지원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 후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
부지매각 상대방	청년농	농업법인
부지조성 및 매각 절차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 → 농어촌공사 기반 조성 → 청년농 대상 임대(최장 30년) → 임대기간 완료 후 매각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 → 농어촌공사 기반 조성 → 농업법인에 매각(일시납 또는 10년 분할상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2년간 총사업비 480억원의 융자·보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청년농지원사업 명목으로 전년대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킨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후 국회 의결을 거쳤으나, **회계연도 시작 전부터 사업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지관리기금의 자본보조를 통해 조성된 농지의 혜택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농지 마련의 자금 부담이 큰 청년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농업법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는 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실시한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팜 농가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있어 이러한 **계획의 변경사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지자체 선정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 등을 고려 할 때 적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조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지원대상을 청년농업인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4년 12월에 선정되어야 할 사업부지가 2024년 7월에 선정되어 6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됨

- 참고로, 2023년 사업으로 조성된 농업스타트업단지 2개 지구의 경우 사업 규모가 대규모 스마트팜창업단지의 약 20%에 불과하나, 공사기간이 4~5개월 소요됨

- **남원지구**의 경우 **매입대상 부지에 민간소유 토지가 다수 포함된 상황**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입대상부지 내 국가유산 매장·분포 가능성에 따라, **향후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 조치에 따라 당초 부지선정의 취소, 대체부지 확정 및 후속절차 진행에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사업대상지 현황]

구분	전북 남원	전남 고흥
위치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일원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
규모	16.1ha	20.3ha
필지 수	85	18
소유주	국가 16필지, 민간 69필지	국가 18필지
지장물 현황	폐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17개, 묘지 19기, 복숭아나무 380주 (60,747㎡)	-
비고	남원시의 국유유산 지표조사 실시 중 (2024.8.22.~10.20.) *사업추진 지연 우려가 있어 대체부지도 병행하여 검토중	-

주: 2024. 9. 26. 현재, 세부적인 현황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결정될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상기 상황으로 볼 때, **본 사업은 2025년 내 부지 조성 공사가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조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 남원시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 '25년 공모선정 및 주요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보도자료 참고, '241224)



-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 은 지역농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스마트단지를 10ha 이상 조성하고,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며, 농업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전북 남원시**는 대산면 일원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7.3ha)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2.5ha) ▲스마트팜 혁신단지(5.4ha) ▲스마트원예단지(23.8ha) ▲친환경 스마트에너지타운(1ha)**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첨단 농업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임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수료한 청년농들에게 기본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임대해 영농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농업 인재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며, 또한 대규모 창업단지와 원예단지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2.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1) 사업은 새만금 간선도로(국도 12 · 30호선) 망과 내부 개발용지(복합개발·농생명·관광레저)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4억 8,600만원 증액한 40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회계연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030	12,679	40,165	27,486	216.8

자료: 새만금개발청

○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1,287억원을 투입하여 20.76km의 6차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사업 개요]

○ (구간) 3개 용지*와 동서도로 연결
  * 복합개발·관광레저·농생명용지

○ (규모) 20.76㎞(6차로)

○ (사업비) 11,287억원(전액 국비)
  * (예타통과 결과) B/C=0.68, AHP 0.608

○ (사업기간) '23년~'29년



자료: 새만금개발청

나. 분석의견

○ **새만금개발청은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이후 각 공구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사업 추진 경과]

o ('21.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3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회 신청결과 미선정('19.8., '20.5.)
o ('21.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o ('21 6. ~ '22.10.) 예비타당성조사(KDI) 시행
o ('22.10.)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 예타 통과(B/C 0.68, AHP 0.608)
o ('23. 6.) 지역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고시
o ('23. 7.)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 완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o ('24. 5.) 1차 입찰공고 ☞ 기본설계中(3공구) 및 유찰(1·2공구)
* (1공구) 롯데건설 / (2공구) 포스코건설 / (3공구) 계룡건설, 금광건설
o ('24. 6.) 2차 입찰공고 ☞ 유찰(1·2공구)
o ('24. 7.) 3차 입찰공고 ☞ 유찰(1·2공구)

자료: 새만금개발청

○ 동 사업은 2024년 5월 3개2) 공구로 구분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3공구만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확정되어 기본설계가 실시 중이며, 1·2공구는 3차례('24.5, '24.6, '24.7) 입찰공고에서 1공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만, 2공구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각각 접수하여 유찰되었다.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1공구와 2공구의 계약방법을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2024.9.4.)하여 기본설계에 착수(2024.9.6.)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을 착공('25.4월)하고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25.10월)이라는 설명이다.

○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 130억 2,000만원 중 2024년 8월 현재 시설부대비 100만원 외에는 전혀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2024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24.7월말)							2025 예산안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393	12,734	-	12,393	-	-	-	1,023
· 공사비(420-03)	-	-	-	-	-	-	-	39,007
· 감리비(420-04)	-	-	-	-	-	-	-	79
· 시설부대비(420-05)	286	286	1	286	1	-	-	56
합계	12,679	13,020	1	12,679	1	-	-	40,165

자료: 새만금개발청

○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예산 중 6억 7,100만원 및 시설부대비 중 1억 8,5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될 예정이고, 1·2공구 수의계약(단독응찰) 추진에 따라 낙찰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설계보상비 99억 7,8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024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예산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예산	집행(예정)	이월(예정)	불용(예정)
계		12,679	1,845	856	9,978
기본조사 설계비	각종 영향평가 용역	1,079	408	671	-
	설계보상비	11,314	1,336	-	9,978
시설부대비(조달수수료 등)		286	101	185	-

자료: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지역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새만금 사업 전체의 차질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에 따라 약 8개월 늦어진 동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사업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사업은 하천변에 인접한 하상도로의 출입 차단기와 경보시설 등을 설치 및 연계하여 침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 50%) 2025년 예산안에 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5년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	-	6,000	6,0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추가 소요발굴을 이유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므로 자동차단시설이 필요한 침수 취약도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명확한 계획(목표 개소 등)수립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 이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수위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고 위험수위까지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광판과 경보방송으로 침수 위험 및 통제상황을 알리는 등 자동 출입통제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차단시설을 하상도로에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개요]

자동차단시설 설치 예시



출입차단시설


전광판, CCTV, 경보장치


원격 관제·제어 장비

시스템 작동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에 하천 급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원을 통해 침수피해가 잦은 20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 (개소당 1억원)하였다.

○ 이후 2022년 자체조사 결과 전국 침수우려 취약도로는 총 665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근거하여 23년 ~ 25년 3개년간 이 중 하상도로 총 270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일반회계 2733-308)'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전국 침수우려 취약도로 현황(2022년 조사결과)]

(단위: 개소)

시도	계	침수우려 취약도로			
		하상도로	저지대 도로	해안가 위험도로	하천 산책로
계	665	**270**	226	52	117
서울	37	37	-	-	-
부산	104	18	40	22	24
대구	48	40	8	-	-
인천	11	9	2	-	-
광주	14	7	7	-	-
대전	29	6	7	-	16
울산	42	13	22	-	7
세종	22	11	9	-	2
경기	113	40	40	-	33
강원	7	7	-	-	-
충북	20	12	8	-	-
충남	6	2	-	4	-
전북	6	-	-	-	6
전남	19	3	5	-	11
경북	22	1	19	-	2
경남	139	64	59	-	16
제주	26	-	-	26	-

자료: 행정안전부

○ 당초 3년간 추진예정이던 이 사업은 2023년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등 침수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잔여 사업 대상지 180개소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예산 135억원)하였으며 9월 현재 국고보조금 교부가 완료된 상황이다.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한 하상도로에 대한 설치사업이 금년도 완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동일 대상지인 하상도로에 동일 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업내용으로 지원단가와 사업명만 변경하여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연도별 침수우려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2023	2024	2025	2025
대상		주요 하상도로			주요 하상도로
개소수	계획	90	90	90	60
	집행	90	180	-	-
개소당 소요		1.5억원	1.5억원	1.5억원	2억원
예산액		6,750	13,500	-	6,0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사업종료와 함께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를 재조사한 결과 시설 설치를 완료한 지구 외에도 1,000여개의 지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침수이력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고 차단시설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30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5년간(25~29년) 매년 60개소씩 시설설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재해예방사업은 무엇보다 위험지역과 사업대상 개소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피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침수우려 하상도로가 300개소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수요 파악과 계획수립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수립한 계획 역시 재조사 결과 1,000여개의 도로가 침수우려가 있고, 이 중 하천변과 가까운 도로를 중심으로 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보다 명확한 지구 구분과 위험도 측정에 근거하여 총 사업 대상 개소를 설정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고보조율이 50%로 높지 않고 제방 건설과 같은 직접적 재해예방 사업과 달라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하상도로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실수요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선행하여 총 대상개소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관련 침수피해 현황분석과 사업대상지 설정,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근거한 계획에 근거하여 침수우려 취약도로의 피해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특수교육 재정지원 및 특수학급 설치 확대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15,610명으로 2023년보다 5,907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1,085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특수학급 3,973명, 일반학급 780명이 증가였다. 2024년 특수학교는 총 195교로 2023년보다 1개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3,931학급으로 2023년보다 644학급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2020~2024년]

(단위: 교, 학급,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5,907
특수학교 재학생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1,085
일반학교 특수학급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3,973
일반학교 일반학급	16,061	16,600	17,514	18,474	19,254	780
특수학교 수	182	187	192	194	195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644
교원 수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1,485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4. 8.

○ 2024년도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

3조 6,657억원, 국립 특수학교 633억원, 국립학교 특수학급 47억원을 합하여 총 3조 7,337억원이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조달되며 국립학교 예산은 국고로 지원된다.

○ 특수교육 예산은 2015년 2조 2,276억원에서 2024년 3조 7,337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인당 특수교육비는 2,529만원에서 3,22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1인당 특수교육비는 3,229만원으로 전년대비 124만원 감소하였다.

나. 분석의견

○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2015~2023년 동안 연평균 5.8%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연평균 2.5% 증가하여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 그러나 교육청의 총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70%가 조달되기 때문에 전체학생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학생 1인당 교육청 교육예산은 2015~2023년 동안 연평균 7.2% 증가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 증가율 3.2%를 4.0%p 상회하였다.
- 이에 따라 **1인당 교육예산 대비 1인당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2015년 2.6배에서 2019년 2.1배, **2023년 1.8배로 하락**하였다.
- 교육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 등 다양한 수요를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교육청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예산 대비 1인당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때문에

특수교육 부문에 과소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청별로 1인당 지원액에 편차(2,353만원~4,058만원)가 있으며, 일부 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특수교육 예산이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 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에 적극적인 예산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청별로 재정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격차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둘째, 특수학교 설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학생 수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국)공립·사립 학교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유·초·중등 특수학교는 195교이며, 이 중 국립 5교, 공립 100교, 사립 90교이다.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9,512교이며, 이 중 국립 39교, 공립 9,235교, 사립 238교이다.
- 현재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2024년에는 전년대비 1개교가 신설되었다. **특수학교의 부족** 때문에 **특수학교 재학생 중 47.2%**의 학생이 **통학에 편도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이 비중은 교육청별로는 경북이 최고 73.4%에 달한다.
-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최근 10년간 학교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재학생 비중은 2015년 29.6%에서 2024년 26.3%로 감소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학생 비중은 동기간 52.6%에서 57.1%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를 합하면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73.7%**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지역별, 국공립·사립별, 학교급별 설치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을 보면, 지역별로 전국은 46.6%이지만 세종 77.1%에서 전북 36.5%로 격차가 있다. 설립별로 보면, 국립은 70.9%, 공립은 60.0%, 사립은 4.8%로 사립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립의 경우 설치가 전혀 되지 않은 지역(울산, 세종, 강원)도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5.1%, 초등학교 79.9%, 중학교 65.5%, 고등학교 48.9%로,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낮은 경향이 있다.
- 종합하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학생 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국)공립·사립 학교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폭넓게 인정하여 충분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취지를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회